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602호 2023. 3. 16.(목)

입 법 예 고

제2023-10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제2023-11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고 시

제2023-117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도 홈페이지 고시)
제2023-118호	의령 보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설치인가 고시..... 11
제2023-119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 12
제2023-1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13
제2023-12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19
제2023-1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 정정 고시..... 20
제2023-1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 정정 고시..... 24

공 고

제2023-56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35
제2023-57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사항 공고..... 35
제2023-57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78호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시행(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7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36
제2023-58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81호	2023년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82호	전력시설물 설계업 양도·양수 사항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83호	전력시설물 감리업 양도·양수 사항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8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제2023-585호	용역 입찰 공고(제4차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G2B 공고)	
제2023-586호	용역 입찰 공고(2023년 경남청년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G2B 공고)	
제2023-587호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88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37
제2023-58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90호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변경신고 공고.....	41
제2023-59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92호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공고.....	42
제2023-59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9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9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43
제2023-59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48
제2023-59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98호	2023년 제1회 경상남도 공무원노동자 채용(재공고) 최종합격자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99호	2023년 경남청년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모집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01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49
제2023-602호	용역 입찰 공고(경남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G2B 공고)	
제2023-603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말소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0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60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606호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모집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609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제2023-61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61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6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50
제2023-613호	측량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14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16호	측량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17호	제한경쟁 입찰 공고[맥류, 콩 겸용 콤바인 구입](G2B 공고)	
제2023-618호	공사 제한입찰경쟁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61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620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취소(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2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623호	용역 입찰 공고(2023년 도민예산학교 운영 용역)(G2B 공고)	
제2023-624호	2023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알 림

창원시 고시 제2023-49호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지형도면 고시.....	52
창원시 고시 제2023-52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 계획시설(공공청사55)사업 실시계획 고시.....	77
진주시 고시 제2023-51호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3호공원)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79
진주시 고시 제2023-52호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복합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82
진주시 고시 제2023-53호	진주도시관리계획(초장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5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진주시 고시 제2023-54호	진주도시관리계획(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95
진주시 공고 제2023-723호	진주도시계획시설(소로문산2-11호선)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168
진주시 공고 제2023-724호	진주도시계획시설(중로1-22호선)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 송달 공고.....	170
사천시 고시 제2023-41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남부 근린공원6 (망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77
사천시 고시 제2023-42호	사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⑥:망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181
거제시 고시 제2023-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82
거제시 고시 제2023-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85
거제시 고시 제2023-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87
거제시 공고 제2023-4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 인정을 위한 열람·공고.....	189
양산시 고시 제2023-84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남평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91
창녕군 고시 제2023-32호	창녕군계획시설(도로:소로2-3호)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92
고성군 공고 제2023-431호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호선(고성초교~고성애육원간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194
산청군 고시 제2023-44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96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3-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3-1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3-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공고 제2023-69호	경남도립남해대학 조교 채용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2023-15호	2023년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p>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3-84호</p> <p>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3-85호</p> <p>경상남도환경교육원 공고 제2023-1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45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47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48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49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50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51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52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53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54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55호</p> <p>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2호</p> <p>경상남도도립미술관 공고 제2023-5호</p> <p>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고 제2023-14호</p> <p>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고 제2023-15호</p> <p>경남대표도서관 공고 제2023-6호</p> <p>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138호</p> <p>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3호</p> <p>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4호</p> <p>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5호</p> <p>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7호</p> <p>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8호</p> <p>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0호</p>	<p>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p> <p>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p> <p>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p> <p>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공고)</p> <p>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p> <p>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p> <p>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p> <p>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p> <p>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공고)</p> <p>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공고)</p> <p>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공고)</p> <p>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p> <p>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G2B 공고)</p> <p>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p> <p>2023년 경남도립미술관 시설물 및 정원관리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p> <p>2023년 제3회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p> <p>2022년산 하계전작물 잔여량 매각 입찰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p> <p>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p> <p>「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7</p> <p>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206</p> <p>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207</p> <p>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208</p> <p>하천점용허가 고시..... 209</p> <p>하천점용허가 고시..... 210</p> <p>하천점용허가 고시..... 211</p>
----------------------------------------------------------------------------------------------------------------------------------------------------------------------------------------------------------------------------------------------------------------------------------------------------------------------------------------------------------------------------------------------------------------------------------------------------------------------------------------------------------------------------------------------------------------------------------------------------------------------------------------------------------------------------------------------------------------------------------------------------------------------------------------------------------------------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12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8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213

입 법 예 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10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4. 5.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연 락 처: 055-211-3714 (FAX: 055-211-3719)

3) E-mail : bloom12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2022년 7월”을 “2023년 7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2년 7월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 ----- ----- -----(2023년 ----- ----- 2023년 7월-----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11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경상남도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및 자치입법 정책지원, 예산 분석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신규 지정

3. 주요내용

-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7.(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 3) E-mail : maczoo@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규칙 제 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4급)”을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4급) 및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4급)”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4급)</u>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제3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4급) 및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4급)</u>----- ----- ----- -----.</p>

고 시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18호

의령 보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인가내용

사 업 의 목 적		의령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화정면 상일리, 상이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시 설 의 명 칭		의령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중동리)		
	성 명	의령군수		
사업시행지	위 치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697-4번지 일원		
	처리장면적	644㎡		
시 설 용 량		120㎡/일 (증설 60㎡/일)	처리공법	JASSFR공법 (기존 MEMSYS공법)
처리구역		0.191㎢		
사 업 시 행 기 간		2023. ~ 2024.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시설명	토지 소재지		지목	대장상의 면적(㎡)	편 입 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보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697-4	답	644	644	-	의령군

※ 인가와 관련한 관계도서 열람기관 : 의령군 상하수도과(055-570-3923)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19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고시사항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 대상문화재의 종별, 명칭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2. 해제일자 : 2023. 3. 9.

3. 연 락 처 - 경남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전화 055-211-4575~4576 팩스 055-211-4559)

- 창녕군청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로 1

(전화 055-530-1474 팩스 055-530-1470)

붙임 1. 도 유형문화재 지정해제 조서 1부

2. 도 유형문화재 지정해제 사유 1부

1. 도 유형문화재 지정해제 조서

종별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및 관리자	소재지
유형문화재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7구	대한불교조계종 관룡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2. 도 유형문화재 지정해제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 지정(2023. 3. 9일자)으로 인한 지정 해제.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연속지적도)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비고
도로	국도	58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579-1 ~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358-12	0.68	-	사업기간 연장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고시

나.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20. 07 ~ 2022. 06

변 경 : 2020. 07 ~ 2023. 10

다.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위임기관 : 국토교통부)

* 관련근거 : 일반국도 위임에 관한 양해각서(2009.12.)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3. 도면 등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밀양시청 건설과,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붙임. 1]

위 치 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붙임. 2]

편입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밀양시 부북면)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춘화리	335-1	답	2,987	174	이경수	춘화리 562	
2	"	579-1	도	2,213	520	국(국토교통부)		
3	"	578-3	도	172	172	국(국토교통부)		
4	"	575-2	도	410	340	손성주	덕곡리 647	
5	"	335-2	답	3,260	174	이상재	춘기3길 42	
6	"	335-11	도	16	16	국(국토교통부)		
7	"	335-3	답	1,267	9	신영문외1인	무안면 사명로 463	
8	"	335-14	도	18	10	밀양시		
9	"	335-12	도	57	57	국(국토교통부)		
10	"	335-15	도	233	1	밀양시		
11	"	335-13	도	142	97	국(국토교통부)		
12	"	339-8	답	1,750	5	고서례	춘화리 748-6	
13	"	553-1	도	1,507	1489	국(국토교통부)		
14	"	339-4	답	1,891	22	윤은정외1인	상남면 대성3길 2-3	
15	"	339-5	답	1,167	142	이민옥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268	
16	"	549-8	구	29	29	국(국토교통부)		
17	"	822-8	천	235	235	국(국토교통부)		
18	"	339-6	답	1,202	517	이경수	춘화리 562	
19	"	335-8	답	7	1	밀양시		
20	"	335-9	답	6	6	밀양시		
21	"	552-1	도	17	16	국(국토교통부)		
22	"	549-6	도	5	5	국(국토교통부)		
23	"	541-3	도	126	57	밀양시		
24	"	549-5	도	83	83	밀양시		
25	"	340-7	도	2	2	밀양시		
26	"	340-8	도	258	74	밀양시		
소 계				19,060	4,253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연번	소재지 (밀양시 부북면)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27	춘화리	549-1	도	7	7	국(국토교통부)		
28	"	340-1	창	826	189	박수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86-245	
29	"	548-1	도	160	160	김양곤	내이동	
30	"	547-2	도	179	179	장기찬	용지리 453	
31	"	340-2	답	2,313	188	박윤현	내일동 268	
32	"	548-2	도	1,353	1,352	국(국토교통부)		
33	"	340-3	구	102	1	국(농림수산식품부)		
34	"	340-4	답	2,990	5	박관중	서울시 서초구 신반로포16길 15-20	
35	"	377	구	2,118	21	국(농림수산식품부)		
36	"	342-9	도	687	53	국(농림수산식품부)		
37	"	375	도	1,928	36	국(농림수산식품부)		
38	"	376	구	609	7	국(농림수산식품부)		
39	"	342-10	답	2,397	307	성용임외1인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508-35	
40	"	343-1	답	308	171	성낙삼	부산시 북구 화명동 206	
41	"	342-11	답	1,016	695	국(기획재정부)		
42	"	601-5	도	2,240	2,240	국(국토교통부)		
43	"	343-2	답	1,652	381	박수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86-245	
44	"	342-21	답	32	17	국(기획재정부)		
45	"	426	구	4,550	48	국(농림수산식품부)		
46	"	427	구	1,966	21	국(농림수산식품부)		
47	"	345-1	답	3,016	599	김정용외1인	부산시 남구 대연동 1808	
48	"	344-11	답	1,555	430	유기선	단장면 표충로 1024	
49	"	608-2	도	1,102	1,102	국(국토교통부)		
50	"	345-27	답	135	75	밀양시		
51	"	428	도	1,655	35	국(농림수산식품부)		
52	"	491	구	376	10	국(농림수산식품부)		
소 계				35,272	8,329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연번	소재지 (밀양시 부북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53	"	344-12	도	932	28	국(농림수산식품부)		
54	"	350-15	답	220	122	밀양시		
55	"	611	도	1	1	이기운	춘화리 291	
56	"	350-1	답	2,839	472	이수국	부북로 60-1	
57	"	349-11	답	1,545	858	박상오외2인	교동 858-3	
58	"	639-2	도	1,206	1,206	국(국토교통부)		
59	"	641-2	도	248	248	국(국토교통부)		
60	"	662-2	도	162	162	정황용	춘화리 290	
61	"	489-1	구	6	6	국(농림수산식품부)		
62	"	489	구	975	8	국(농림수산식품부)		
63	"	426-1	구	57	32	국(농림수산식품부)		
64	"	355-1	답	1,942	80	김용수	밀양대로 1755, 103동 1005호	
65	"	355-13	도	481	433	국(국토교통부)		
66	"	354-11	도	1,644	505	국(국토교통부)		
67	"	660	도	75	75	국(국토교통부)		
68	"	832-6	구	107	107	국(국토교통부)		
69	"	657-3	도	588	582	국(국토교통부)		
70	"	656-3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71	"	656-2	도	155	73	국(국토교통부)		
72	"	655-1	도	646	49	국(국토교통부)		
73	"	655-2	도	149	42	김학술	춘화리	
74	"	426-2	구	37	17	국(농림수산식품부)		
75	"	469-1	도	73	37	국(농림수산식품부)		
76	"	358-12	도	3,320	179	국(국토교통부)		
소 계				17,448	5,362			
합 계				71,780	17,944			

구도58호선 민양부북준화 단구간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결정(변경) 도면

범례

-  도로구역(당초)
-  도로구역(변경)
-  점도구역(당초)
-  점도구역(변경)
-  지적선

S = 1 : 1,200



0 20 50 100M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2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허가번호 : 제2023-5호(통영)
- 허가연월일 : 2023년 3월 9일

2. 점용·사용의 목적

- 조선작업장 및 선가대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통영시 인평동 470-10번지 지선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 적 : 9,660㎡(직접 6,300㎡, 간접 3,360㎡)
- 기 간 : 2023. 3. 11. ~ 2026. 3. 10.

5.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주)코리아조선 대표이사 정○준 외 1명
- 주 소 : 경남 통영시 국치해안길 ○○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 정정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25호(2022.1.1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장지도로 선형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당초	지방도	1010	하이~ 동해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일원	26,110㎡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027-6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575-4	고성군 하일 삼산 고성 거류	77.6
변경	지방도	1010	하이~ 동해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일원	26,253㎡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027-6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575-4	고성군 하일 삼산 고성 거류	77.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장지도로 선형개선공사 편입토지의 분할, 면적정정 등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8. ~ 2026. 1.

4.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도면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청 도로과, 고성군 건설과

첨부서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	(㎡)		분자	분모					
1	변경없음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산8-9	도	1,579	1,597	경상남도							
2	변경없음	"	산8-5	도	144	144	고성군							
3	변경없음	"	산9-2	도	99	99	경상남도							
4	변경없음	"	산9-1	도	99	99	국(건설부)							
5	변경없음	"	산8-4	도	76	76	고성군							
6	변경없음	"	산8-8	도	201	201	경상남도							
7	변경없음	"	산8-2	도	2,876	2,876	국(건설부)							
8	변경없음	"	산8-6	도	62	62	고성군							
9	당초	"	산10-2	도	1,488	30	국(건설부)							
	변경	"	산10-7	도	1,488	32	국(건설부)							
10	당초	"	산10-4	도	439	43	고성군							
	변경	"	산10-8	도	42	42	고성군							
11	당초	"	산8-3	임	13,485	377	문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40 신월2차미소지음 302-703				
	변경	"	산8-11	임	371	371	문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40 신월2차미소지음 302-703				
12	변경없음	"	산10-3	임	289	289	문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40 신월2차미소지음 302-703				
13	변경없음	"	산11-8	임	272	272	김경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46 시영아파트 33동907호				
14	변경없음	"	산12	임	198	198	송기찬							
15	당초	"	산11-5	도	178	22	고성군							
	변경	"	산11-10	도	19	19	고성군							
16	당초	"	산10-6	도	2,300	1,568	경상남도							
	변경	"	산10-9	도	1,607	1,607	경상남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17	당초	"	산11-2	도	1,686	122	국(건설부)							
	변경	"	산11-9	도	115	115	국(건설부)							
18	변경 없음	"	산11-3	임	93	93	김경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46 시영아파트 33동907호				
19	당초	"	산13-3	임	5,862	192	이수갑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225				
	변경	"	산13-7	임	192	192	이수갑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225				
20	변경 없음	"	산13-6	도	3,825	3,825	경상남도							
21	변경 없음	"	산13-5	도	216	216	고성군							
22	변경 없음	"	산15-6	도	17	17	고성군							
23	당초	"	산15-2	도	595	218	국(건설부)							
	변경	"	산15-9	도	258	258	국(건설부)							
24	당초	"	산18-2	도	992	976	국(건설부)							
	변경	"	산18-7	도	967	967	국(건설부)							
25	당초	"	산18-5	도	475	461	고성군							
	변경	"	산18-8	도	373	373	고성군							
26	당초	"	산19-6	도	456	351	고성군							
	변경	"	산19-11	도	269	269	고성군							
27	당초	"	산19-2	도	2,678	920	국(건설부)							
	변경	"	산19-8	도	966	966	국(건설부)							
28	당초	"	산19-5	임	8,051	987	박민희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6길 54-2				
	변경	"	산19-10	임	1,026	1,026	박민희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6길 54-2				
29	당초	"	산19-3	도	893	37	이강민							
	변경	"	산19-9	도	42	42	이강민							
30	당초	"	산20-4	임	9,111	181	김정석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1로 64, 403동701호				
	변경	"	산20-12	임	180	180	김정석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1로 64, 403동701호				
31	당초	"	산20-1	도	2,876	969	경상남도							
	변경	"	산20-7	도	993	993	경상남도							
32	당초	"	산20-2	도	1,983	594	국(건설부)							
	변경	"	산20-9	도	588	588	국(건설부)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33	변경 없음	"	산20-5	임	99	99	김갑훈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39					
34	당초	"	산20-3	도	1,388	218	경상남도								
	변경	"	산20-11	도	268	268	경상남도								
35	변경 없음	"	산47-1	임	99	99	오창석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1-8, 101동 606호					
36	당초	"	산47-2	도	397	87	국(건설부)								
	변경	"	산47-5	도	70	70	국(건설부)								
37	당초	"	산48-1	도	198	149	국(건설부)								
	변경	"	산48-9	도	159	159	국(건설부)								
38	당초	"	산48-2	도	2,094	317	오충근	1	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변경	"	산48-10	도	319	319	오충근	1	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미복구1)	1	3						
							(미복구2)	1	3						
39	당초	"	산52-1	임	14,678	2,337	김수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49-8					
	변경	"	산52-4	임	2,354	2,354	김수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49-8					
40	당초	"	산52-2	도	1,488	1,171	국(건설부)								
	변경	"	산52-5	도	319	319	국(건설부)								
	변경	"	산52-6	도	908	908	국(건설부)								
41	당초	"	산48-3	도	298	33	국(건설부)								
	변경	"	산48-11	도	57	57	국(건설부)								
42	당초	"	산52-3	도	198	13	이은조								
	변경	"	산52-7	도	12	12	이은조								
43	당초	"	산53-8	수	417	27	고성군								
	변경	"	산53-9	목	37	37	고성군								
44	변경 없음	"	산53-2	도	2,281	2,281	국(건설부)								
45	변경 없음	"	산53-4	임	595	595	고성군								
46	변경 없음	"	237	도	76	76	국(건설부)								
47	변경 없음	"	산53-5	도	496	496	송기찬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306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 정정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25호(2022.1.1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하이~덕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당초	지방도	1001	하이~고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27,582㎡	덕호리 산70-1	덕호리 598-6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0.88
변경	지방도	1001	하이~고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28,867㎡	덕호리 산70-1	덕호리 598-6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0.8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하이~덕호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의 분할, 면적정정 등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12. ~ 2024. 1.

4.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도면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청 도로과, 고성군 건설과

첨부서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하이~덕호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서			비고
		군	면	리	지번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0-1	임	1,884	675	김경균	사천시 향촌동 802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0-5	임	620	620	공	경상남도				면적
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8-2	답	5	5	박순자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6길 51-3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8-2	답	5	5	공	경상남도				
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9-1	임	4,364	145	김치영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67, 114동 1206호(부곡동, 부곡늘푸른아파트)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9-11	임	173	173	공	경상남도				면적
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6-2	답	382	382	박순자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6길 51-3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6-2	답	382	382	공	경상남도				
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5-2	답	347	222	노시열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23길 24, 102동 201호 (황상동, 세아빌라)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5-3	답	228	228	공	경상남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5-2	답	119	119	공	경상남도				잔여지 매입
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5-1	답	337	337	조두만	사천시 사동동 127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5-1	답	337	337	공	경상남도				
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4-2	답	42	42	박순자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6길 51-3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4-2	답	42	42	공	경상남도				
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2	전	1,339	437	박종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미로 14, 102동 1401호(연산동, 동덕현대아파트)	한국전력 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2-1	전	442	442	공	경상남도				면적
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3-3	도	83	83	공	고성군				
1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3-2	전	545	516	김정업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44-1	한국전력 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3-4	전	518	518	공	경상남도				면적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3-2	전	27	27	공	경상남도				잔여지 매입
1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8	임	595	175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13	임	185	185	공	경상남도				면적
1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2-5	대	603	347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2-9	대	119	119	공	경상남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2-10	대	347	347	공	경상남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사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1-2	전	288	288	박영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사곡리 335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1-2	전	288	288	공	경상남도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1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2	전	1,504	260	전경섭	전라북도 진주시 덕진구 송천3길 50,102동 1004호(송천동1가, 용소마을제일아파트)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경남은행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 3.15대로642	임차권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2-6	전	38	38	공	경상남도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임차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2-7	전	222	222	공	경상남도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임차권	
1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2-1	도	466	129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2-8	도	125	125	공	경상남도				면적
1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9	임	137	5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14	임	4	4	공	경상남도				면적
1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6	잡	421	334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9	잡	333	333	공	경상남도				면적
1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2	장	660	320	문연경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59	정진국	부산 동래구 은천동 1038-8 부강빌라 501호	압류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7	장	326	326	공	경상남도				면적
1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3	도	171	171	공	고성군				
2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5	대	178	91	문연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59	삼천포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2 (벌리동)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8	대	92	92	공	경상남도				면적
2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1	임	1,488	53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10	임	2	2	공	경상남도				면적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11	임	6	6	공	경상남도				면적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12	임	48	48	공	경상남도				면적
2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0-1	도	261	261	공	고성군				
2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2-4	도	1	1	공	고성군				
2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9-2	도	16	16	공	고성군				
2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1-1	도	17	6	손선유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1-1	도	17	17	손선유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면적
2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0-2	도	56	56	손선유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2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19	도	136	136	공	고성군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의권리조사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1-3	도	72	60	한국전력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1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1-3	도	72	72	한국전력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1				면적
2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1-2	전	358	57	전명자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67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1-4	전	59	59	전명자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67				면적
3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8-3	도	78	78	공	고성군				
3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2	장	1,411	179	전명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2	진주원에 농업협동 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초전동)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2-6	장	170	170	전명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2	진주원에 농업협동 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초전동)	근저당권	면적
3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8-2	도	10	10	최형호	사곡리 429				
3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2-3	도	72	72	공	고성군				
3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2-3	도	51	51	공	고성군				
3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2-2	도	13	13	손선유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3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1-2	도	142	142	조기룡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92				
3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1-3	도	56	56	임재수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954				
3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3-4	잡	1,415	68	노유영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51, 1416호 (용강동, 삼보신우타운)	삼천포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2 (벌리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3-5	잡	70	70	공	경상남도				면적
3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301	계	1,154	28	국	건설부				
4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6	장	1,448	1	김혜나 외1인	경남 사천시 숯피길68-11,402호 (향촌동,우성퍼이스빌 3차))	삼천포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2- (벌리동)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6	장	1,448	1	김혜나 외1인	경남 사천시 숯피길68-11,402호 (향촌동,우성퍼이스빌 3차))	삼천포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2 (벌리동)	근저당권	제외
4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7-1	도	10	10	최낙기	사곡리 2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7-1	도	10	10	공	경상남도				
4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7-7	도	227	227	공	고성군				
4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2	도	271	271	박종성	136				
4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3	도	340	340	공	고성군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사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7-4	답	735	110	김혜나 외1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926-9 우성피이스빌 (3차) 402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7-8	답	35	35	김혜나 외1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926-9 우성피이스빌 (3차) 402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면적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7-9	답	78	78	김혜나 외1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926-9 우성피이스빌 (3차) 402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면적
4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7-6	도	651	651	공	고성군				
4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8-1	답	2,938	277	박순이	경상남도 사천시 목섬길 52(서금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8-4	답	273	273	공	경상남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8-5	답	5	5	공	경상남도				
4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8-2	답	118	102	박순이	경상남도 사천시 목섬길 52(서금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8-6	답	103	103	공	경상남도				면적
4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8	답	2,862	326	박순이	경상남도 사천시 목섬길 52(서금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8-3	답	328	328	공	경상남도				면적
5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9	도	261	16	공	고성군				
5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0-2	도	99	22	김경관	사천시 향촌동 802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0-2	도	48	48	공	경상남도				면적
5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2-4	도	1,380	179	공	고성군				
5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8-1	도	7	7	박상필	745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8-1	도	7	7	공	경상남도				
5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8-3	도	64	64	공	고성군				
5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1-6	도	97	3	공	고성군				
5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1-4	도	26	13	박상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1-4	도	26	26	박상계					면적
5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299	도	6,201	3,851	국	건설부				
5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6-3	도	534	534	공	고성군				
5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6-1	도	79	79	조기룡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92				
6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4-3	도	94	94	공	고성군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사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4-1	도	1	1	박상필	745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4-1	도	1	1	공	경상남도				
6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1-5	도	269	141	공	고성군				
6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71-3	도	198	198	박상계					
6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7-4	도	220	131	공	고성군				
6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7-2	도	99	99	박삼수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7-2	도	99	99	공	경상남도				
6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0-1	도	51	22	공	고성군				
6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7-1	도	640	291	공	고성군				
6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3-1	도	7	7	박상필	745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23-1	도	7	7	공	경상남도				
6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6	도	58	58	공	고성군				
7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3	도	17	17	박상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3	도	17	17	공	경상남도				
7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1-5	도	4	4	문학수	75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1-5	도	4	4	공	경상남도				
7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1-3	도	7	7	조기룡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92				
7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21	도	652	316	공	고성군				
7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1-1	도	50	50	조기룡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92				
7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01-4	도	29	29	공	고성군				
7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2	도	43	43	박상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8-2	도	43	43	공	경상남도				
7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4	도	21	21	공	고성군				
7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2	도	99	99	박상문					
7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8-2	도	279	113	공	고성군				
8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16	임	6,786	4	건용산업 주식회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255	한국전력 공사주식 회사 조흥저축 은행	서울특별시강남 구영동대로512(삼 성동) 경상남도통영시 항남5길9(항남동)	근저당권, 구분 지상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16	임	4	4	건용산업 주식회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255	한국전력 공사주식 회사 조흥저축 은행	서울특별시강남 구영동대로512 (삼성동) 경상남도통영시 항남5길9(항남동)	근저당권, 구분 지상권	제외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사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86-1	도	99	99	조기룡	사천군 삼천포읍 서금리 92				
8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2-4	도	179	179	공	고성군				
8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2-3	답	394	38	정수연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591	삼천포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2(벌리동)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2-7	답	38	38	정수연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591	삼천포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2(벌리동)	근저당권	
8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20	도	26	26	공	고성군				
8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10	임	73	73	박재극	삼천포시 동금동 311-2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10	임	73	73	공	경상남도				
8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3-2	전	794	288	임상백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8길 1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3-7	전	290	290	공	경상남도				면적
8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3-2	도	291	291	공	고성군				
8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9-1	전	261	261	김우조	762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9-1	전	261	261	공	경상남도				
8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3-1	전	443	406	임상백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8길 1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3-5	전	3	3	공	경상남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3-6	전	408	408	공	경상남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3-1	전	32	32	공	경상남도				잔여지 매입
9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9	전	265	265	김우조	762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9	전	265	265	공	경상남도				
9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9	임	1,054	196	박재극	삼천포시 동금동 311-2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6-22	임	252	252	공	경상남도				면적
9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7	대	288	32	박치욱	777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7-1	대	34	34	박치욱	777				면적
9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8-1	대	269	269	김명순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70-1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78-1	대	269	269	공	경상남도				
9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4-5	임	3,471	249	건웅산업 주식회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431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4-6	임	274	274	건웅산업 주식회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431				면적
9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2-1	전	422	422	배관실	사천시 벌리동 424-5 삼우빌라 303호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2-1	전	422	422	공	경상남도				
9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3	임	198	40	김기정	사천군 삼천포읍 향촌리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63-1	임	44	44	김기정	사천군 삼천포읍 향촌리				면적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의권리조서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9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1-4	도	30	30	공	고성군						
9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1-1	전	208	208	배관실	사천시 벌리동 424-5 삼우빌라 303호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61-1	전	208	208	공	경상남도						
9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9-1	대	569	30	박제극	61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9-2	대	30	30	공	경상남도						
10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5	전	243	234	강영봉 외1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44-1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8	전	234	234	공	경상남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5	전	9	9	공	경상남도					잔여지 매입	
10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4	전	1,512	1,057	강영봉 외1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44-1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7	전	1,057	1,057	공	경상남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4	전	455	455	공	경상남도					잔여지 매입	
10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1	전	285	11	강영봉 외1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44-1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5-6	전	11	11	공	경상남도						
10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4-3	도	14	14	공	고성군						
10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4-2	도	294	294	최낙기	고성군 하이면 사곡리42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4-2	도	294	294	공	경상남도						
10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4-1	전	1,859	620	박제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11-2001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4-5	전	611	611	공	경상남도					면적	
10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4-4	대	342	69	신태마을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60-3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54-6	대	69	69	공	경상남도						
10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8-1	도	112	112	공	고성군						
10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8	답	324	297	김기성	44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8-2	답	303	303	공	경상남도					면적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8	답	21	21	공	경상남도					잔여지 매입	
10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3	전	40	40	장우석	73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3	전	40	40	공	경상남도						
11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3	답	5,557	11	박제홍	638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3-1	답	11	11	공	경상남도						
11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0-3	대	286	264	장우석	730-3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0-6	대	274	274	공	경상남도					면적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사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1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5	전	18	18	장우석	73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5	전	18	18	공	경상남도						
11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7	전	608	335	조덕문	울산시 중구 남외동 375-17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10	전	331	331	공	경상남도					면적	
11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3	전	799	259	장녕조씨충익공파15대손종친회	삼천포시 사등동 127-1						
11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9	전	260	260	공	경상남도					면적	
11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8	전	871	287	정복남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20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13	전	292	292	정복남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209					면적	
11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4	대	445	27	정복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4	새고성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23-17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12	대	28	28	정복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4	새고성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23-17	근저당권		면적	
11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10	대	215	152	박철원	사천시 용강동 837-1 사천용강주공아파트 102-80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14	대	155	155	공	경상남도					면적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10	대	215	60	공	경상남도					잔여지 매입	
11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3	전	1,238	574	박정행	13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11	전	594	594	공	경상남도					면적	
11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1	전	2,165	1	정두기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3길 18	새고성 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 80	근저당권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11-1	전	1	1	공	경상남도						
12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98-7	도	7	7	공	고성군						
12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98-4	답	2,294	184	손원식	삼천포시 선구동 20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98-14	답	183	183	공	경상남도					면적	
12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98-3	답	939	334	박희숙	고성읍 성내리 129-1	새고성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27-8	근저당권 지상권			
122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98-13	답	332	332	공	경상남도					면적	
12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1	대	661	86	김선자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9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9	대	84	84	공	경상남도					면적	
12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2	도	241	241	최낙기	사곡리 42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2	도	241	241	공	경상남도						
12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8	도	13	13	김선자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9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8	도	13	13	공	경상남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서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2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5	도	198	198	공	고성군				
12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4	도	23	23	공	고성군				
12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6	도	86	70	김선자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9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29-6	도	86	86	공	경상남도				면적
12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0-5	도	107	107	공	고성군				
13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0-2	도	53	53	최낙기	사곡리 42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0-2	도	53	53	공	경상남도				
13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0-1	대	16	16	장우석	73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0-1	대	16	16	공	경상남도				
13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0-4	도	4	4	공	고성군				
13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6-2	도	43	43	박지수					
13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6-3	도	7	7	공	고성군				
13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5-1	도	75	75	공	고성군				
13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3	대	823	54	박상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76-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3-2	대	54	54	공	경상남도				
13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4-3	도	10	10	공	고성군				
13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4-2	도	40	40	박상문	619				
13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4-4	도	7	7	공	고성군				
14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1	대	231	103	박진욱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7길 10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8	대	99	99	공	경상남도				면적
14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5	도	312	312	공	고성군				
14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4	도	24	24	공	고성군				
14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2	도	218	218	조택수외2인	사천군 삼천포면 사동리 45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1-2	도	218	218	공	경상남도				
14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5	도	9	9	공	고성군				
145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1	진	44	44	고성박씨신택대종중	624-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1	진	44	44	공	경상남도				
146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7	도	310	310	공	고성군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서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47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2	도	463	463	강영기	사천군 삼천포읍 동리				
148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44-1	임	11,116	166	고성박씨 신덕대종중	624-4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44-4	임	178	178	공	경상남도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44-5	임	15	15	공	경상남도				
149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732-6	도	468	468	공	고성군				
150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44-2	도	198	173	박상엽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44-2	도	198	198	박상엽					면적
151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42-2	도	13	8	박상국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42-2	도	13	13	박상국					면적
152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08-6	도	548	289	공	고성군				
153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08-1	창	1,597	74	신태마을	560-3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08-12	창	74	74	공	경상남도				
154	당초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08-2	도	331	136	최낙기	사곡리 429				
	변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08-2	도	331	331	공	경상남도				면적

공 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6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신규등록현황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비고
906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541번길 7 새마을회관 3층	이강은	2023-03-06	○ 탄소중립실천운동 ○ 지역새마을운동 활성화	055-335-3571	도민봉사과	신규 등록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7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말소등록(1개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변경)	비고
693	녹색안전 운동연합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32 동우상가 403호	안** 강**	2013.3.22.	생활안전교육 및 재난대비교육	-	안전정책과	말소	(말소일자) 2023.3.6. (말소사유) 등록요건 미달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7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대표자)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등록변경 현황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변경)	비고
612	함안청년회의소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35 1층	박성용	2011-04-06	○ 지역사회개발, 개인능력개발 ○ 국제경험개발, 사업능력개발	583-2627	도민봉사과	대표자 변경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88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승인(변경)일자 : 2023년 3월 16일

2. 관리계획(변경)의 주요 내용

시설명	사 업 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월 역사	국가철도공단 스마트레일(주)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729지 일원	12,670	증) 530	13,200	1,496.09	감) 42.62	1,453.47	• 세부변경내역 - 형질변경면적 증가 - 건축연면적 감소 (위치 및 평면배치 변경에 따른 면적 축소)

※ 관리계획 최초 승인(국토교통부 2021. 12. 28.) : 형질변경 12,670m² / 건축연면적 1,496.0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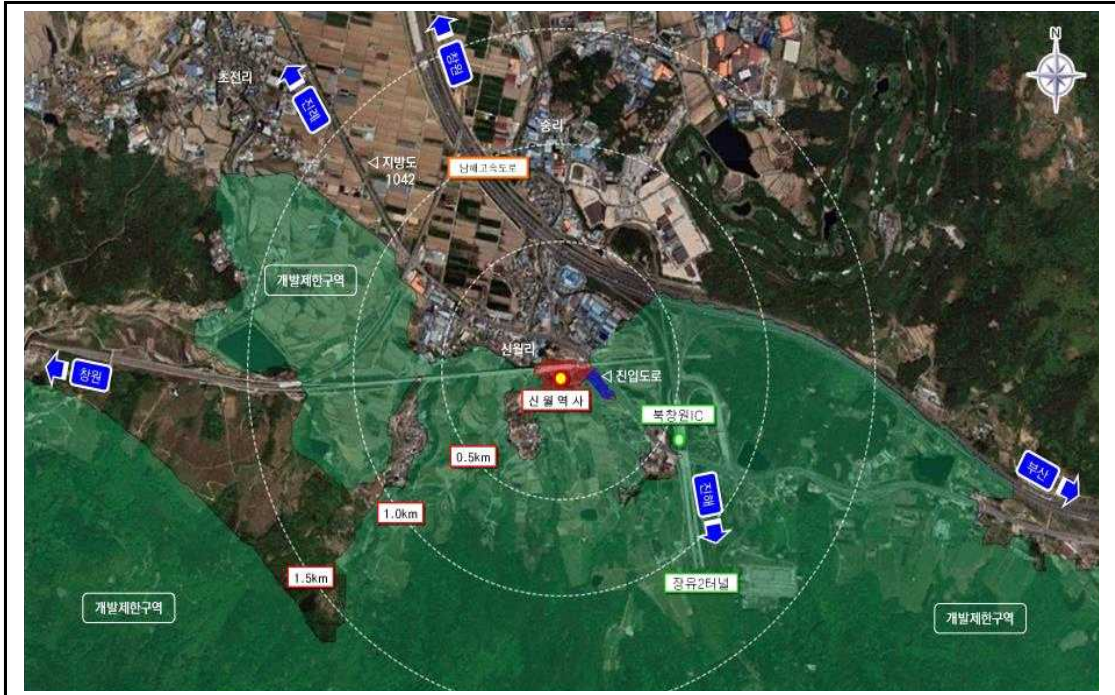
3.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225),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3586)

4. 열람기간 : 공고일부더 14일간

붙임 1. 신월역사 관리계획 변경 1부.

[붙임 1] 신월역사 관리계획 변경

1.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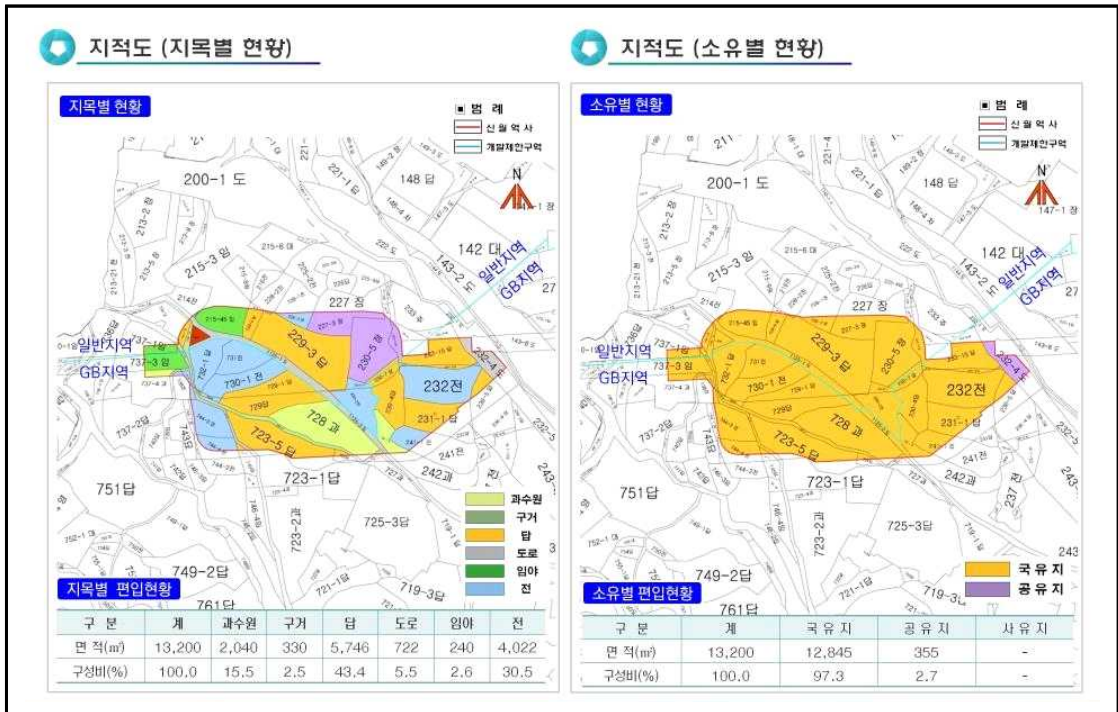
2. 항공사진



3. 현황사진



4. 지적도



5. 도시관리계획결정도



6. 시설배치계획도(변경)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90호**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변경신고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변경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유형	변경사항	적용일
인셀덤 더베스트 대리점	경남 2023-제9호	김도학	소제지 변경	변경전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324번길 54-27, 103동 3201호(봉황동, 봉황역e편한세상아파트) 변경후 : 경상남도김해시경원로84,205동801호 (내동, 임호마을현대2차아파트)	2023.3.6.
봄날	경남 2022-제212호	박선희	소제지 변경	변경전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신안동) 변경후 : 경상남도진주시진양호로294, 제2-2호(신안동)	2023.3.6.
소미(so:me)	경남 2022-제222호	이소미	상호 변경	변경전 : 소미(somie) 변경후 : 소미(so:me)	2023.3.6.
인셀덤 노블썸	경남 2023-제6호	김가빈	소제지 변경	변경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 30, 108동 204호(경화동, 두산위브) 변경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37번길6, 옥포상가 1층 5호(경화동)	2023.3.10.

2. 처리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3. 문 의 처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300 경상남도청 일자리경제과
(☎ 055-211-3354)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92호**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리사항	
				폐업일	폐업사유
뉴랜드 알로에	경남2013-제236호	송명애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0길 18-2(옥포동)	2023.02.21.	자진 폐업
인셀덤 퀸 대리점	경남2022-제44호	박명숙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7 (전하동, 두산전하빌라4차)	2023.02.20.	자진 폐업
인셀덤 조이	경남2021-제95호	서정화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95, (초전동, 힐스테이트 초전)	2023.02.20.	자진 폐업
손결뷰티샵	경남2022-제217호	윤소영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15	2023.02.21.	자진 폐업
인셀덤(그린대리점)	경남 2021-제168호	정미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8 207동 801호(대방동, 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2023.02.28.	자진 폐업
라인인셀덤	경남 2022-제189호	유미경	경남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25-61 남강휴먼빌아파트 106동 901호	2023.02.28.	자진 폐업
인셀덤 고운 대리점	경남 2020-제141호	신예섭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32, 404동 304호 (삼문동, 켈미마을부영그린타운 7차)	2023.02.28.	자진 폐업
스타인셀덤	경남 2022-제159호	신아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29번길 30-7 (평거동) 1층	2023.02.28.	자진 폐업
인셀덤 서희대리점	경남2022-제213호	서정희	경남 진주시 진주역로96번길 15 포레나신진주 102동 1403호	2023.02.28.	자진 폐업
인셀덤 메세	경남 2020-제8호	박모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4, 107동 603호(외동, 일동한신아파트)	2023.02.28.	자진 폐업
현수대리점	경남2022-제199호	김종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48 (상남동, 대우아파트) 3동 403호	2023.02.28.	자진 폐업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리사항	
				폐업일	폐업사유
인셀덤 메이저	경남 2022-제62호	김승준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688 108동 1706호 (내덕동, 내덕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2023.02.28.	자진 폐업
인셀덤 티나대리점	경남 2020-제146호	김선희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2길 23, 103동 302호 (덕포동, 거제옥포도묘토1단지)	2023.02.28.	자진 폐업
인셀덤광광대리점	경남 2021-제213호	김보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273번길 12-3, 301호(경화동, 수진빌라)	2023.02.28.	자진 폐업
인셀덤이레대리점	경남 2021-제110호	권영애 (73063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제로29번길 5-10, 1층(용원동)	2023.02.28.	자진 폐업
진주라라	경남2021-제108호	박신영	경상남도 진주시 술밭로92번길 14(상평동)	2023.03.02.	자진 폐업
인셀덤 금빛나라대리점	경남2021-제114호	김미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99, 211동 1503호(남양동, 성원2차아파트)	2023.03.03.	자진 폐업

2. 처리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3. 문 의 처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일자리경제과 ☎ 055-211-3354)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9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3. 3. 16.(목) ~ 2023. 3. 30.(목)(15일간)

※ 농협 289-01-007146 [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1,840,000원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당사자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반송 사유
1	앞)경남99사22*9 뒤)경남82사91*2	2023.2.7. 16:57분경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지방도 1021호선 상	총중량 30.90톤 초과	임*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1*6, 가동 *호	1,500,000	이사 불명
2	경북06모85*0	2023.2.7. 10:47분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국지도 60호선 상	총중량 7.90톤 초과	성*현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번길 *0-1, 40*호	800,000	이사 불명

6.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3. 4. 19.(수)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사전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위반행위가 제3자에 의해 기인된 사실(차량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요구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차상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귀하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규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산출근거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은 금액(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납기 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귀하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과태료 체납 사실이 없는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마. 미성년자
5.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께서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때에는 과태료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과태료의 강제 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체납 등의 정보 제공,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監置) 등의 조치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 나.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허가받은 사항(총중량, 축하중, 폭, 높이, 길이)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도로법」 제1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2) 「도로법」 제1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70	100
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80	120	16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파.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50	220	300
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30		
거.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00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9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위한 확인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문서를 해당 건설사업자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1.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2. 시정명령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필요한 확인자료를 2023. 3. 31.(금)까지 경상남도(건설지원과)로 제출할 것
-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 4. 처분일자 :** 2023. 3. 7.

5. 처분업체별 위반 세부내용

일련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종명 (업등록번호)	위 반 행 위 (위반법령)	비 고
1	세종건설(주) (정황규)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천로 260(하대동)	토목건축공사업 (170085)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확인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위반)	
2	(주)천도건설 (전근도)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용암로 671-6	토목공사업 (11-0469)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확인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위반)	
3	성우토건(주) (배정훈)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1길 77	토목건축공사업 (16-0111)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확인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위반)	
4	(주)해담종합건설 (조영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742-2, 3층	토목건축공사업 (1572)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확인자료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위반)	

6. 문의사항이 있을 시 경상남도 건설지원과(055-211-29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공고 제2023-601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건설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채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행정처분 내역

- 가. 청 문 일 : 2023. 2. 28.(화)
- 나. 행정처분일 : 2023. 3. 7.(화)
- 다. 업체별 처분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	위 반 내 용	관련법령	처분내용	비고
(주)엘림종합건설 (김미경)	건축공사업 (050433)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441(삼정동)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3호	영업정지 6개월 (2023. 3. 31. ~ 2023. 9. 30.)	

2.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내용을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건설지원과(055-211-2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공고 제2023-6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 및 소제지 확인이 불가능한 비영리단체 및 대표자에게 청문 실시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처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2. 예정된 처분내용 : 등록의 말소
3. 처분사유 : 현지확인 및 단체 실사 결과 장기간 미운영 확인
4. 청문대상 : 나라꽃사랑시민모임 대표자 김제현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703-2, 대동아파트 101-904
5. 청문장소 : 경남도청 청문상담실(본관 3층, 법무담당관실 옆)
6. 청문일시 : 2023. 3. 27.(월) 14:00

7. 유의사항

-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8.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

- 청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023. 3. 24.(금)까지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또는 의견제출서 제출
 - ※ 행정절차 참여 신청 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별도 통지 예정
 - ※ 의견서·행정절차참여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방법
 - ▶ 제 출 처 : 경상남도청 산림휴양과 김태성(☎ 055-211-6865)
 - ▶ 제출방법 : 우편·팩스·이메일 송부 시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 직접방문 : 상기 제출처
 - 우 편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상남도 산림휴양과 김태성 주무관
 - 팩 스 : 055-211-6869
 - 이 메 일 : taeseong10@korea.kr
 - ▶ 기타사항 : 의견제출서 및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서식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

알 림

● 창원시 고시 제2023-49호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7-209호(2017.09.1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5호(2018.01.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118호(2018.05.03.)로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정정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45호(2019.03.14.)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279호(2019.12.12.), 창원시 고시 제2021-251호(2021.9.23.), 창원시 고시 제2021-365호(2021.12.3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2-76호(2022.04.15.)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2-253호(2022.12.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창 원 시 장

Ⅰ.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 면 적
 - 도시개발구역 : 327,291.5㎡
 - 구역 외 사업 : 38,797.2㎡(교통광장 : 36,761.1㎡, 도로 : 2,036.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지역 내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지역민의 여가, 문화, 건강,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업무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7. 09. 14. ~ 2023. 12. 31.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

- (1) 토지이용계획 (변경)
 - 가) 도시개발구역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27,291.5	-	327,291.5	100.0			
교육연구시설용지	153,388.9	-	153,388.9	46.9	교육연구시설(G) 학교 중복(A=11,660.9m ²) 포함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13,773.0	-	13,773.0	4.2		
	체육시설	7,173.0	-	7,173.0	2.2		
	업무시설	6,600.0	-	6,600.0	2.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60,129.6	-	160,129.6	48.9		
	도 로	57,049.6	-	57,049.6	17.4	도시계획도로(A=56,225.6m ²), 구역 외 2,036.1m ²	
	광 장	18,174.0	-	18,174.0	5.6	근린공원 중복(A=2,187m ²) 제외, 구역 외 36,761.1m ²	
	공 원	소계	63,399.0	-	63,399.0	19.4	
		근린공원	52,193.0	-	52,193.0	16.0	2개소, 광장중복(A=2,187m ²) 포함, 유수지중복(A=4,410.6m ²) 포함
		소공원	11,206.0	-	11,206.0	3.4	3개소
	녹 지	17,493.6	-	17,493.6	5.3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2개소	
	주차장	4,013.4	-	4,013.4	1.2	1개소	
	(학교)	-	증) 11,660.9	(11,660.9)	(3.6)	교육연구시설용지 중복(A=11,660.9m ²)	
	(유수지)	(4,200.0)	증) 210.6	(4,410.6)	(1.3)	근린공원 중복(A=4,410.6m ²)	
	(근린공원, 광장 중복)	(2,187.0)	-	(2,187.0)	(0.7)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나) 구역외 사업 (변경없음)
- 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

- 가) 도로 계획 (변경없음)
- 나)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 다) 공원 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	-	63,399	-	63,399	
근린 공원	소계	-	52,193	-	52,193	
	91	진해구 태백동 산52-105번지 일원	29,382	-	29,382	광장 100 중복 (2,187m ²)
	9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811	-	22,811	유수지 51 중복 (4,410.6m ²)
소공원	소계	-	11,206	-	11,206	
	10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934	-	2,934	
	10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3,679	-	3,679	
	10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4,593	-	4,593	

- 라) 녹지 계획 (변경없음)
- 마) 광장 계획 (변경없음)
- 바) 학교 계획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 11,660.9	11,660.9	-	
신설	281	학교	중학교	진해구 여좌동 70번지 일원	-	증) 11,660.9	11,660.9	교육연구시설(G)

사) 유수지 계획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 210.6	4,410.6	-	
변경	51	유수지	저류 시설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4,200	증) 210.6	4,410.6	근린공원 92 중복 (4,410.6m ²)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토지명세서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공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창원시청(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II.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지역 내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지역민의 여가, 문화, 건강,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업무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 면 적
 - 도시개발구역 : 327,291.5㎡
 - 구역 외 사업 : 38,797.2㎡(교통광장 : 36,761.1㎡, 도로 : 2,036.1㎡)

4.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5.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7. 09. 14. ~ 2023. 12. 31.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사용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2) 공간시설 (변경없음)
-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가) 학교 (신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	-	증 11,660.9	11,660.9	-	-
신설	281	학교	중학교	진해구 여좌동 70번지 일원	-	증 11,660.9	11,660.9	-	교육연구시설(G)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1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신설 - A=11,660.9m² (증 11,660.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용지(G) 내 중학교 설치를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 조건사항[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이행

4) 방재시설 (변경)

가) 우수지 (변경)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	4,200	증 210.6	4,410.6	-	-
변경	51	우수지	저류 시설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4,200	증 210.6	4,410.6	창원시고시 제2018-5호 (2018.1.11)	근린공원 92 중복 (4,410.6m ²)

○ 우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	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A=4,200m²→4,410.6m² (증 210.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공원시설과 조화되는 우수지 설치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	-	171,175.3	-	-	171,175.3	-
	교[A]	14,324	-	진해구 태백동 26-32번지 일원	14,324	• 교육연구시설용지
	교[B]	78,080	-	진해구 태백동 20-2번지 일원	78,080	• 교육연구시설용지
	교[C]	10,613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633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146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92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847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95		
	교[D]	15,438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9,628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5,810	
	교[E]	10,500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36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24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03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530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07	
	교[F]	12,773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95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31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347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50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850	
	교[G]	11,660.9	-	진해구 여좌동 70번지 일원	11,660.9	• 교육연구시설용지
	체	7,173	-	진해구 여좌동 12번지 일원	7,173	• 체육시설용지
	업	6,600	1	진해구 여좌동 13번지 일원	3,300	• 업무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13번지 일원	3,300	
	주	4,013.4	-	진해구 여좌동 78번지 일원	4,013.4	• 공공시설용지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	-	171,175.3	-	-	171,175.3	-
	교[A]	14,324	-	진해구 태백동 26-32번지 일원	14,324	• 교육연구시설용지
	교[B]	78,080	-	진해구 태백동 20-2번지 일원	78,080	• 교육연구시설용지
	교[C]	10,613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633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146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92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847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95		
	교[D]	15,438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9,628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5,810	
	교[E]	10,500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36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24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03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530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07	
	교[F]	12,773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95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31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347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50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850	
	교[G]	11,660.9	-	진해구 여좌동 70번지 일원	11,660.9	• 교육연구시설용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
	체	7,173	-	진해구 여좌동 12번지 일원	7,173	• 체육시설용지
	업	6,600	1	진해구 여좌동 13번지 일원	3,300	• 업무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2	진해구 여좌동 13번지 일원	3,300	
	주	4,013.4	-	진해구 여좌동 78번지 일원	4,013.4	• 공공시설용지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변경)

(1) 교육연구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용지 [A] [G]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매립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B]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10층이하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용지 [B]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C]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p>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D]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의 9호 가목에서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용지 [D]	건축물 용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발전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E]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용지 [F]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2) 체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체육시설용지 [체]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권장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3) 업무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시설용지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 (지역자치센터, 과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속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목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 권장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 (지역자치센터, 과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속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목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4)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용지 [주]	<p>건축물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장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부대시설(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부대시설이라함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말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건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이하
	<p>용적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이하
	<p>높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이하
	<p>배 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p>형 태</p> <p style="text-align: center;">-</p>
	<p>색 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p>건축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용지 [A]	<p>건축물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매점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p>건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이하
	<p>용적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이하
	<p>높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이하
	<p>배 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용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B]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물관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C]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물관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이하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용지 [C]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D]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의 9호 가목에서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발전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E]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용지 [E]	건축물 용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시설용지 [F]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육연구시설용지 [G]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설치 기준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용지 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중학교 설치를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 조건사항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2) 체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체육시설용지 [체]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권장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3) 업무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시설용지 [업]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속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목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 권장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속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목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
	색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4)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용지 [주]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부대시설(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부대시설이라함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말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용지 [주]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 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름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6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등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여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 본 지침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통 사항, 제7장은 기타사항으로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3장은 교육연구시설용지에, 제4장은 체육시설용지에, 제5장은 업무시설용지에, 제6장은 노외주차장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창원시 관련조례를 따른다.

- 본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지침내용을 수용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허용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어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용적률”이라 함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 “건폐율”이라 함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범위 안에서 별표로 정한 건폐율을 말한다.
 -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조성에 적용된다.

제2장 공통사항

제1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제2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계획된 경우 해당 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부설 주차장)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과 창원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교육연구시설용지

제1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따른다.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220%	5층/ 10층 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60%	-

- 교육연구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최고층수는 5층이하(A, C, E, G), 10층 이하(B, D, F)로 적용한다.

제3조 (가구 및 획지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연결한 필지의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한다. 단, 합병된 획지의 재분할은 가능하다. 이 경우 최초 결정된 획지계획을 준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제4장 체육시설용지

제1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따른다.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220%	5층 이하
60%	-

- 체육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적용한다.

제5장 업무시설용지

제1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따른다.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220%	5층 이하
60%	-

- 업무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적용한다.

제3조 (가구 및 획지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연결한 필지의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한다. 단, 합병된 획지의 재분할은 가능하다. 이 경우 최초 결정된 획지계획을 준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제6장 노외주차장

제1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따른다.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220%	5층 이하
60%	-

- 노외주차장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적용한다.

제7장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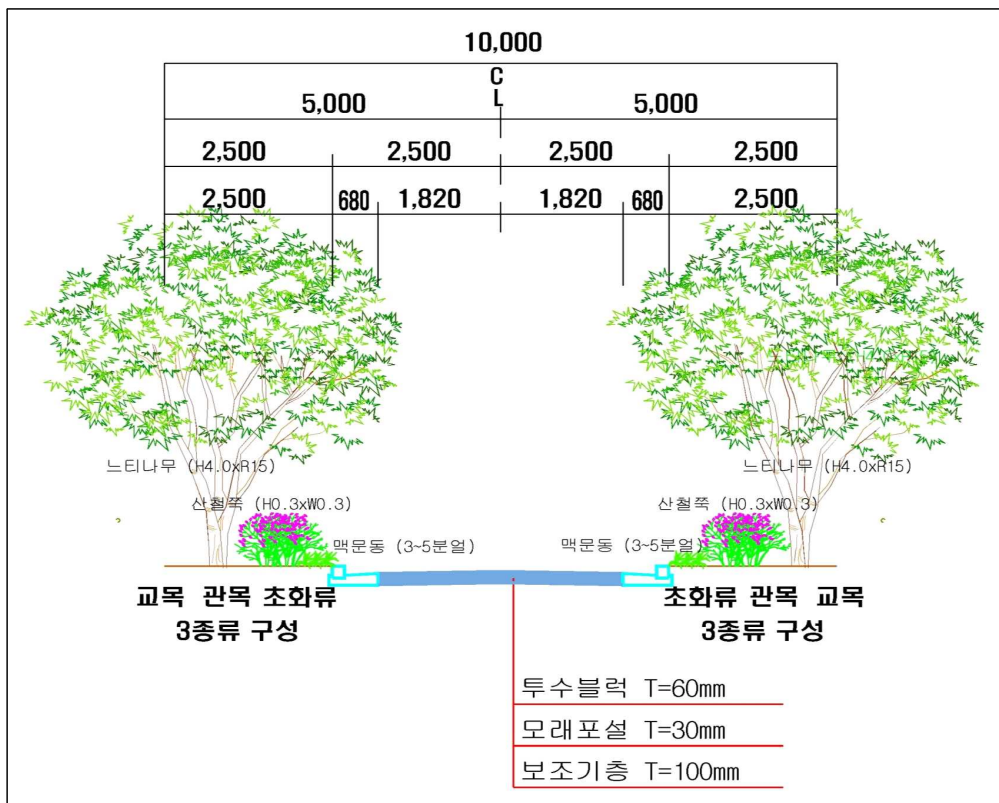
제1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 등에 따른다.

제2조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사항)

- 설치방식 및 위치
 - 설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분할된 획지선으로부터 양측 각 5m(통로폭 10m)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 통행에 장애가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토록 조성하되, 예시 단면도와 같이 식수대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Amenity 향상을 도모한다.

<공공보행통로 예시 단면도>



- 식재 수종
 - 교목, 관목, 초화류 3종류로 구성한다. 교목은 느티나무(H4.0×R15), 관목은 산철쭉(H0.3×W0.3), 초화류는 백문동(3~5분얼)을 주로 식재하고, 조화로운 조경을 형성할 수 있는 기타 수종도 식재할 수 있다.
- 포장
 - 공공보행통로의 일체감있는 조성을 위하여 투수블럭(T=60mm), 모래포설(T=30mm), 보조기층(T=100mm)으로 포장토록 한다.
- 보행안전 안내시설
 -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부에 안내 표지판 또는 1m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위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차량의 접근을 최소화한다.
 - 안내기둥 시설은 주간에는 시각적으로 지역(장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색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낮과 밤에도 연속적인 차량 및 보행안내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 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도록 설계·배치한다.

제3조 (가로식재에 관한사항)

- 수종선정
 - 훼손되는 수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목을 조경수로 활용토록 권장한다.
 - 가로외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 이식이 용이하고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은 가급적 배제한다.
- 식재방법
 - 가로조명과 교통안내 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한다.
 - 간선도로의 교차부에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 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한다.
 -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1~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 공간을 조성한다.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 배치와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휴게공간 설치를 권장한다.

제4조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

- 창원시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생태 개념 적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창원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학교시설은 안전을 이유로 옥상개방이 제한적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대지 내 공지 계획)

-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도로에서 후퇴된 건축선 후퇴공간에는 자연생태적 연결 녹지공간 확보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경관형성과 어메니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상 토지이용 용도별 구분된 건축선 계획에 따라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한다.
 - 주요 교차로 및 결절점 등이 있는 경우 보도 공개공지, 전면공지, 건축물의 입면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확보와 보행자 편의가 확보되는 통합설계를 권장한다.
- 교차로 및 인접필지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설계
 - 소형 필지는 주변 녹지공간과 가구 및 획지간의 연계체계를 고려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이 외부에서 내부로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도로와 연계한 가로공간 조성
 - 보도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등을 일체적으로 조성하여 단차발생을 최소화하고 녹지공간연계 도모, 보행자의 가로활동을 감안하여 활동공간을 배분하여야 한다.
 - 조경식재로 인한 가로지장물은 가급적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계획과 연계한 녹지공간 확보
 - 선형 녹지 확장 개념에서 건축물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건축물 이용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이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공지 계획)

- 조성형태
 -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지양한다.
 -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등과 투수성 포장 등을 권장한다.
 -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쌈지공원 형태를 권장한다.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도형 공개공지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물 재이용 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빗물의 효율적 이용도모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공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창원시청(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
- 지형도면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창원시 고시 제2023-52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55)사업 실시계획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1-119호(2021.05.14.)로 최초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55)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창 원 시 장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55	완월동 행정복지 센터	공공 청사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3번지 일원	1,930.7	증)2.4	1,933.1	창원시고시 제2021-119호 (2021.05.14)	-

나.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 종류	위 치	건축물의 범위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변경 없음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공공 청사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3번지 일원	60% 이하	220% 이하	-	제2종일반 주거지역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5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면적 변경 (증 2.4m ²) 1,930.7m ² → 1,933.1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현장 시공여건에 따른 구역 변경

2.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55)사업
- 명 칭 :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A=1,933.1m²
- 규 모 : 건축면적 887.68m², 연면적 1,730.87m²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마산합포구 행정과)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 12. 31.

바. 관계도서: 실음생략[창원시청 도시계획과(055-225-4145),
마산합포구 행정과(055-220-4047)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3	대	1,804.5	1,800.2	창원시	-				
2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54	대	7.3	7.3	김*범	부산 중구 부평동 ****				
3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55	도	169.2	125.6	김*범	부산 중구 부평동 ****				
	합 계			1,981.0	1,933.1						

● **진주시 고시 제2023-51호**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3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3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8757) 및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T.055-749-8618)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진 주 시 장

가.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선학공원)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8757) 및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T.055-749-8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공원: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3호공원)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공원: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3호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3호공원	근린 공원	사곡리 1853일원	65,322.2	-	65,322.2	경상남도고시 제2005-15호 '05.01.20	토지 합병에 의한 위치변경

2. 도시관리계획(공원: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3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규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65,322.2		65,322.2	-	증)63	63	-	증)63	63	-
시설지 소계	16,288	증)6,812	23,100	-	증)63	63	-	증)63	63	시설율 35.4%
도로및광장	16,288	감)12,798	3,490	-		-	-		-	
운동시설	-	증)19,288	19,288	-	-	-	-	-	-	
편익시설	-	증)322	322	-	증)63	63	-	증)63	63	
녹지및기타	49,034.2	감)6,812	42,222.2	-		-	-		-	녹지율 64.6%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나. 공원 세부시설 조서(변경)

구 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공원 면적			65,322.2		65,322.2		증)63	63		증)63	63
시설지 면적			16,288	증)6,812	23,100		증)63	63		증)63	63
도로	기정	1	도로	1,656	-	1,656					
	변경	2	산책로	976	증)83	1,059					
	폐지	3	광장	13,656	감)13,656	-					
	신설	3	주차장		증)775	775					
	소계			16,288	감)12,798	3,490					
운동시설	신설	4-1	파크골프장1		증)6,198	6,198					
	신설	4-2	파크골프장2		증)13,030	13,030					
	소계				증)19,288	8,425					
휴양시설	신설	6	쉼터		증)268	268	증)54	54		증)54	54
	신설	6	화장실		증)54	54	증)9	9		증)9	9
	소계				증)322	322		63			63
녹지	변경		녹지	49,034.2	감)6,812	42,222.2					
	소계			49,034.2	감)6,812	42,222.2					

다. 도로 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총 계				699	2,632				
변경	총 계				712	2,715				
기정	소로	3	1	7	280	1,656	일반도로	공원경계	다목적광장2	
변경		3	1	7	280	1,656	일반도로	공원경계	주차장	
기정		3	2-1	2	247	495	산책로	도로	다목적광장3	
변경		3	2-1	2	247	542	산책로	도로	주차장	
기정		3	2-2	2	39	79	산책로	산책로1	다목적광장3	
변경		3	2-2	2	36	77	산책로	산책로1	쉼터	
기정		3	2-3	3	133	402	산책로	진입로	도로	
신설		3	2-4	2.5	8	19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신설		3	2-5	2.5	8	19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 진주시 고시 제2023-52호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복합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복합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8757) 및 사업부서인 도시계획과(T.055-749-893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진 주 시 장

가.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복합문화공원)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8757) 및 사업부서인 도시계획과(T.055-749-8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공원: 복합문화공원)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공원:복합문화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복합 문화 공원	철도 문화 공원	문화 공원	강남동 245-110 번지 일원	42,077.0	증) 31	42,108	진주시고시 제2020-34호 (20.3.19.)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2. 도시관리계획(공원: 복합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계	42,077.00	증) 31	42,108.00	21,677.73	3	1,366.17	1,366.17	91	
시설지 소계	21,677.73	-	21,677.73	21,677.73					시설율 51.48%
기반시설	도로	-	6,901.10	6,901.10					
	광 장	-	3,932.09	3,932.09					
조 경 시 설	4,502.46	-	4,502.46	4,502.46				6	
휴 양 시 설	794.88	-	794.88	794.88				27	
유 회 시 설									
운 동 시 설	1,241.51	-	1,241.51	1,241.51				3	
교 양 시 설	3,427.46	-	3,427.46	3,427.46	2	1,151.44	1,151.44	3	
편 익 시 설	878.23	-	878.23	878.23	1	214.73	214.73		
관 리 시 설								52	
녹지 및 기타	20,399.27	증) 31	20,430.27						
시설율 (법정제한 없음)	$(21,677.73/42,108.00) \times 100 = 51.48\%$								
건폐율 (법정20%)	$(1,366.17 / 42,108.00) \times 100 = 3.24\%$								

나. 공원 세부시설 조서(변경)

구 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2,108.00	21,677.73	3	1,366.17	1,366.17	91	
기반시설	소 계	10,833.19	10,833.19					
	도로	6,901.10	6,901.10					
	광장	가	3,932.09	3,932.09				
	진입광장	가-1	(2,099.12)	(2,099.12)				
	마실마당	가-2	(765.30)	(765.30)				
	광장-1	가-3	(613.69)	(613.69)				
	광장-2	가-4	(453.98)	(453.98)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 계		4,502.46	4,502.46			6	
	잔디마당	나	4,502.46	4,502.46				
	잔디마당-1	나-1	(3,735.33)	(3,735.33)				
	잔디마당-2	나-2	(767.13)	(767.13)				
	파고라	①		0.00			2	
	미러폰드	②		0.00			1	
	옹벽	③		0.00			3	
휴양시설	소 계		794.88	794.88			27	
	휴게소	다	794.88	794.88				
	휴게소-1	다-1	(420.00)	(420.00)				
	휴게소-2	다-2	(374.88)	(374.88)				
	휴게소-3	다-2	(58.88)	(58.88)				
	등의자	④					5	
	평의자	⑤					7	
	연식테이블	⑥					1	
	야외테이블	⑦					10	
	앉음벽	⑧					1	
	침목스탠드	⑨					2	
스탠드	⑩					1		
운동시설	소 계		1,241.51	1,241.51	0		3	
	자연놀이뜰	라	1,241.51	1,241.51				
	트리하우스	⑪					1	
	고사목	⑫		-			2	
교양시설	소 계		3,427.46	3,427.46	2	1,151.44	1,151.44	3
	생태학습원	마	670.25	670.25				
	전차대 (미러폰드)	바	529.85	529.85	7			
	야외전시장	사	787.06	787.06				
	구)진주역사 (역사전시관)	1	723.53	723.53	1	549.14	549.14	
	차량정비고 (다목적홀)	2	716.77	716.77	1	602.30	602.30	
	전망대1	⑬						1
	전망대2	⑭		-				1
	전시가벽	⑮		-				1

구 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 계		878.23	878.23	1	214.73	214.73	
	주차장	아	500.99	500.99				
	객차	자	41.80	41.80				
	커뮤니티지원시설	3	335.44	335.44	1	214.73	214.73	
관리시설	소 계							52
	입구명판	⑩		-				2
	공원등	⑪						50
녹지 및 기타	소 계		20,430.27					
	녹지		20,430.27					

● **진주시 고시 제2023-53호**

진주도시관리계획(초장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초장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진 주 시 장

1.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055-749-8873) 및 문화예술과(☎055-749-855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1	진주 초장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주시 초전동 1257번지 일원	518,222.7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518,222.7	100.0	
주거 지역	소 계	508,844.1	98.2
	제1종일반주거지역	40,292.4	7.8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762.8	31.2
	제3종일반주거지역	255,146.0	49.2
	준주거지역	51,642.9	10.0
자연녹지지역	9,378.6	1.8	

나)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종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69	8,842	115,776.8	116,253.8				
일반 도로	소	계	-	47	8,331	106,138.5	106,615.5			
	중	로	소	계	-	11	4,117	69,898.2	70,375.2	
		1	류	20	4	2,473	47,400.3	47,877.3	L=239m(반폭편입)	
		2	류	15	3	795	12,032.9	12,032.9	L=100m(반폭편입)	
		3	류	12	4	849	10,465.0	10,465.0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종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일반 도로	소 계		-	36	4,214	36,240.3	36,240.3	
	소 로	1류	10	11	1,690	16,885.3	16,885.3	
		2류	8	24	2,504	19,235.3	19,235.3	L=194m(반폭편입)
		3류	6	1	20	119.7	119.7	
보행자도로	소 계		-	22	511	3,085.6	3,085.6	
	소로	2류	8	1	20	163.9	163.9	
	소로	3류	6	21	491	2,921.7	2,921.7	
가 각 전 제 면 적					-	966.1	966.1	
완 화 차 로 면 적					-	5,586.6	5,586.6	

주) ()는 구역외 사업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면적	가각 전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	69개노선			15,009 (8,842)				235,246.0 (109,193.1)	966.1		완화차로 :5,586.9㎡
	변경	-	69개노선			15,009 (8,842)				235,739.0 (109,670.1)	966.1		완화차로 :5,586.9㎡
중로1 소계	기정		4개노선			8,641 (2,473)				173,460.0 (47,400.3)	43.1		완화차로 :3,789.7㎡
	변경		4개노선			8,641 (2,473)				173,953.0 (47,877.3)	43.1		완화차로 :3,789.7㎡
기정	중로	1	20	20	집산 도로	499 (239)	대1-6	중1-136	일반 도로	10,012.0 (2,409.2)	18.2	경고 제333호 (‘91.9.6)	() 반폭편입
기정	중로	1	22	11~ 22	보조 간선 도로	7,026 (1,116)	중1-33	대1-6	일반 도로	141,068.0 (22,546.8)	-	건고 제6-316호 (‘96.9.30)	사업외구간 L= 283m A=7,060㎡, 완화차로 :1,193.2㎡

주)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면적	가각 전체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6	20~ 22(20)	보조 간선 도로	345	중1-20 (구역계)	중1-22	일반 도로	6,954.0	-	경고 제333호 (‘91.9.6)	완화차로 :591.7㎡
변경	중로	1	136	20~ 23(21)	보조 간선 도로	345	중1-20 (구역계)	중1-22	일반 도로	7,447.0 (7,431.0)	-	경고 제333호 (‘91.9.6)	완화차로 :1,068.7㎡
기정	중로	1	150	20	보조 간선 도로	773	중1-22	중1-22	일반 도로	15,490.3	24.9	경고 제10-314호 (‘10.6.10)	완화차로 :2,004.8㎡
중로2 소계	기정	3개노선				795				12,032.9	109.0		완화차로 :1,705.0㎡
기정	중로	2	130	16	집산 도로	162	대1-6 (구역계)	중1-150	일반 도로	2,589.4	32.6	경고 제10-314호 (‘10.6.10)	완화차로 :619.9㎡
기정	중로	2	131	17	집산 도로	301	중1-150	중1-22	일반 도로	5,130.2	60.7	경고 제10-314호 (‘10.6.10)	완화차로 :579.4㎡
기정	중로	2	132	15	집산 도로	332 (90)	중1-20	중1-22	일반 도로	4,313.3	15.7	경고 제10-314호 (‘10.6.10)	() 일부 반폭편입, 완화차로 :505.7㎡
중로3 소계	기정	4개노선				849				10,465.0	100.3		완화차로 :91.9㎡
기정	중로	3	90	13	집산 도로	260	중2-132	중1-136	일반 도로	3,379.4	35.8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중로	3	91	12	집산 도로	180	중1-150	소1-상평 38	일반 도로	2,168.4	21.9	경고 제10-314호 (‘10.6.10)	완화차로 :91.9㎡
기정	중로	3	92	12	집산 도로	109	중1-150	하촌천 하천구역 (구역계)	일반 도로	1,305.1	9.0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중로	3	93	12	집산 도로	300	중2-132	중1-22	일반 도로	3,612.1	33.9	경고 제10-314호 (‘10.6.10)	

주)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면적	가각 전계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1 소계	기정		11개노선			1,690				16,885.3	225.2		
기정	소로	1	상평 33	10	국지 도로	74	중3-91	소3- 상평131	일반 도로	752.9	12.5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34	10	국지 도로	84	중3-91	소3- 상평132	일반 도로	835.2	5.8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35	10	국지 도로	168	중1-22	중3-91	일반 도로	1,680.1	25.3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36	10	국지 도로	92	중3-91	소1- 상평37	일반 도로	915.8	27.7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37	10	국지 도로	111	소1- 상평35	소1- 상평34	일반 도로	1,110.5	25.1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38	10	국지 도로	399	소1- 상평35	소1- 상평33	일반 도로	3,996.0	38.6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39	10	국지 도로	79	중1-20 (구역계)	중3-93	일반 도로	792.0	12.7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40	10	국지 도로	166	중1-20	중3-90	일반 도로	1,652.5	25.3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41	10	국지 도로	27	소2- 상평100	소1- 상평43	일반 도로	272.3	18.8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1	상평 42	10	국지 도로	214	중1-150	유치원1	일반 도로	2,140.1	13.6	경고 제14-182호 (‘14.5.22)	
기정	소로	1	상평 43	10	국지 도로	276	소2- 상평102 (단독A33)	중3-93	일반 도로	2,737.9	19.8	경고 제14-182호 (‘14.5.22)	
소로2 소계	기정		25개노선			2,524				19,235.3	482.2		
기정	소로	2	상평 84	8	국지 도로	27	소1- 상평42	소2- 상평85	일반 도로	215.6	19.1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85	8	국지 도로	293	소1- 상평42	소1- 상평42	일반 도로	2,350.5	42.3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86	8	국지 도로	26 (26)	중2-132	소2- 상평105	일반 도로	103.6	12.7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87	8	국지 도로	34	소2- 상평93	중3-90	일반 도로	272.3	25.1	경고 제10-314호 (‘10.6.10)	

주)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면적	가각 전체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상평 88	8	국지 도로	117	소2- 상평90	소3- 상평138	일반 도로	937.4	17.3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89	8	국지 도로	211	중3-90	소1- 상평40	일반 도로	1,685.4	31.3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0	8	국지 도로	168	소1- 상평40	소2- 상평93	일반 도로	1,338.2	31.1	경고 제07-212호 (‘07.6.14)	
기정	소로	2	상평 91	8	국지 도로	90	소2- 상평90	소2- 상평93	일반 도로	720.1	25.0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2	8	국지 도로	91	소2- 상평89	소2- 상평94	일반 도로	726.2	25.1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3	8	국지 도로	118	소1- 상평40	소2- 상평88	일반 도로	939.3	25.0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4	8	국지 도로	70	소2- 상평89	소1- 상평40	일반 도로	556.4	25.1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5	8	국지 도로	109	중3-93	소2- 상평104	일반 도로	868.0	25.0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6	8	국지 도로	103	중3-93	소2- 상평104	일반 도로	821.9	25.2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7	8	국지 도로	96	중3-93	소2- 상평104	일반 도로	770.4	25.1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8	8	국지 도로	82	소1- 상평39	소2- 상평105	일반 도로	656.5	28.5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99	8	국지 도로	72 (72)	소1- 상평39	소2- 상평105	일반 도로	294.6	11.2	경고 제10-314호 (‘10.6.10)	() 반폭편입
기정	소로	2	상평 100	8	국지 도로	274	소2- 상평106 (구역계)	소1- 상평43	일반 도로	2,198.7	11.7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101	8	국지 도로	27	소2- 상평100	소1- 상평43	일반 도로	219.9	25.5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102	8	국지 도로	97	중3-93	소1- 상평43	일반 도로	776.4	12.2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103	8	국지 도로	135	소2- 상평100	소1- 상평39	일반 도로	1,083.2	26.4	경고 제07-212호 (‘07.6.14)	

주)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면적	가각 전체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상평 104	8	국지도로	111	소3- 상평136	소3- 상평133	일반도로	893.3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105	8	국지도로	57	소2- 상평86 (구역계)	소3- 상평137	일반도로	452.9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2	상평 106	8	국지도로	48 (48)	소2- 상평100	어린이공 원4	일반도로	161.6	6.2	경고 제10-314호 (‘10.6.10)	() 반폭편입
기정	소로	2	상평 107	8	국지도로	48 (48)	어린이 공원4	소1- 상평39	일반도로	192.9	6.1	경고 제10-314호 (‘10.6.10)	() 반폭편입
기정	소로	2	상평 108	8	특수 도로	20	중2-130	소2- 상평85	보행자 전용 도로	163.9	-	경고 제10-314호 (‘10.6.10)	
소로3 소계	기정		22개노선			511				3,041.4	6.3		
기정	소로	3	상평 117	6	국지 도로	17	소3- 상평124	소2- 상평89	일반도로	119.7	6.3		
기정	소로	3	상평 118	6	특수도로	9	대1-6	소1- 상평38	보행자 전용 도로	60.0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19	6	특수도로	11	대1-6	소2- 상평100	보행자 전용 도로	64.6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0	6	특수 도로	23	중2-130	소2- 상평85	보행자 전용 도로	135.2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1	6	특수 도로	27	중2-130	소1- 상평38	보행자 전용 도로	159.0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2	6	특수 도로	28	중1-22	소1- 상평43	보행자 전용 도로	167.9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3	6	특수 도로	25	중1-20	소2- 상평90	보행자 전용 도로	151.5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4	6	특수 도로	5	중1-20	소3- 상평117	보행자 전용 도로	30.1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5	6	특수 도로	34	소2- 상평103	소2- 상평102	보행자 전용 도로	203.0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6	6	특수 도로	30	중2-132	소2- 상평89	보행자 전용 도로	179.0	-	경고 제10-314호 (‘10.6.10)	

주)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면적	가각 전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상평 127	6	특수 도로	8	대1-6	소2- 상평85	보행자 전용 도로	49.1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8	6	특수 도로	9	대1-6	소1- 상평38	보행자 전용 도로	51.6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29	6	특수 도로	10	대1-6	소2- 상평100	보행자 전용 도로	60.4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0	6	특수 도로	10	대1-6	소2- 상평100	보행자 전용 도로	61.7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1	6	특수 도로	19	중2-130	소1- 상평33	보행자 전용 도로	116.8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2	6	특수 도로	23	중1-22	소1- 상평34	보행자 전용 도로	140.4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3	6	특수 도로	17	중1-22	소2- 상평104	보행자 전용 도로	101.2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4	6	특수 도로	25	중2-132	소2- 상평104	보행자 전용 도로	148.8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5	6	특수 도로	100	중3-93	소2- 상평104	보행자 전용 도로	597.6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6	6	특수 도로	22	중3-93	소2- 상평104	보행자 전용 도로	128.2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7	6	특수 도로	22	중3-93	소2- 상평105	보행자 전용 도로	131.9	-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소로	3	상평 138	6	특수 도로	31	중3-90	중 상평88	보행자 전용 도로	183.7	-	경고 제10-314호 (‘10.6.10)	

주)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36호선	중로1-136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장	· 강제공원내 동부시립도서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폭원 확장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5,175.5	-	5,175.5		
기정	90	주차장	진주시 초전동 1143 번지 일원	1,632.8	-	1,632.8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91	주차장	진주시 초전동 1326 번지 일원	2,296.7	-	2,296.7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92	주차장	진주시 초전동 633 번지 일원	629.0	-	629.0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93	주차장	진주시 초전동 1335-10 번지 일원	617.0	-	617.0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116	주차장	진주시 초전동 1679 번지 일원	2209.0	-	2209.0	경고 제2021-206호 (‘21.10.7)	

나) 공간시설(변경)

1. 녹 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5,696.2 (23,318.2)	감) 477 (감 477)	45,219.2 (22,841.2)		()는구역 내 면적
기정	7	녹 지	완충 녹지	진주시 초전동 1152-2번지 일원	27,562.4 (5,184.4)	-	27,562.4 (5,184.4)	경고 169호 (‘06.6.1)	()는구역 내 면적
변경	50	녹 지	경관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48-36번지 일원	1,500.0	감) 477	1,023.0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51	녹 지	경관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48-11번지 일원	581.6	-	581.6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20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660-70번지 일원	1,063.5	-	1,063.5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21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장재동 571-2번지 일원	3,778.3	-	3,778.3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22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177번지 일원	3,873.2	-	3,873.2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23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34-1번지 일원	727.4	-	727.4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24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35-15번지 일원	852.9	-	852.9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25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17번지 일원	135.9	-	135.9	경고 10- 314호(‘10.6.10)	
기정	26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22번지 일원	1,095.5	-	1,095.5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27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28-1번지 일원	492.2	-	492.2	경고 제10- 314호(‘10.6.10)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8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30-10번지 일원	1,660.2	-	1,660.2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29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29-22번지 일원	148.9	-	148.9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30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29-19번지 일원	1,038.8	-	1,038.8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31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29-12번지 일원	646.3	-	646.3	경고 제10- 314호('10.6.10)	
기정	32	녹 지	연결 녹지	진주시 초전동 1329- 7번지 일원	539.1	-	539.1	경고 제10- 314호('10.6.1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0	녹지	경관녹지	녹지 축소 (A=1,500㎡→1,023㎡, 감477㎡)	·도서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 녹지면적 축소

2. 공 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5,637.4	-	55,637.4		
기정	초장1	공원	역사공원	진주시 초전동 1660-7번지 일원	4,849.3	-	4,849.3	경고 제14-182호 ('14.5.22)	
기정	60	공원	근린공원	진주시 초전동 1660-52번지 일원	10,145.7	-	10,145.7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61	공원	근린공원	진주시 초전동 1330-2번지 일원	10,342.5	-	10,342.5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62	공원	근린공원	진주시 초전동 1660-11번지 일원	15,304.8	-	15,304.8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초장1	공원	어린이공원	진주시 초전동 978번지 일원	1,847.5	-	1,847.5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초장2	공원	어린이공원	진주시 초전동 1335-2번지 일원	2,384.0	-	2,384.0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초장3	공원	어린이공원	진주시 초전동 1079번지 일원	1,500.0	-	1,500.0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초장4	공원	어린이공원	진주시 초전동 630-2번지 일원	1,542.7	-	1,542.7	경고 제10-314호 ('10.6.10)	
기정	문화1	공원	문화공원	진주시 초전동 1328-3번지 일원	7,720.9	-	7,720.9	경고 제10-314호 ('10.6.10)	

3.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진주시 고시 제2023-54호**

**진주도시관리계획(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진 주 시 장

1.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055-749-8873) 및 항공우주사업단(☎055-749-812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붙임】

진주도시관리계획(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4,093,05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4호 (2007.05.31)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4,093,052.6	-	4,093,052.6	100.00	변경없음	
주택건설용지	소계	1,047,018.2	-	1,047,018.2	25.58		
	단독주택용지	433,088.0	-	433,088.0	10.58		
	공동주택용지	계	597,461.0	-	597,461.0	14.6	
		연립	-	-	-	-	
		아파트	597,461.0	-	597,461.0	14.6	
근린생활시설용지	16,469.2	-	16,469.2	0.4			
혁신클러스터용지	소계	464,068.0	19,960	484,028.0	11.83		
	이전공공기관	251,409.2	19,960	271,369.2	6.63		
	산학연클러스터	212,658.8	-	212,658.8	5.20		
상업용지	소계	187,433.0	-	187,433.0	4.58		
	상업용지	80,280.3	-	80,280.3	1.96		
	업무용지	49,970.7	-	49,970.7	1.22		
	주상복합	57,182.0	-	57,182.0	1.40		
도시지원시설용지	소계	1,179,549.8	-	1,179,549.8	28.82		
	도로	777,720.3	-	777,720.3	19.00	보행자도로	
	주차장	30,571.1	-	30,571.1	0.75		
	광장	1,491.5	-	1,491.5	0.04		
	공공청사	8,015.7	-	8,015.7	0.19	우체국, 파출소등	
	교육시설	92,143.8	-	92,143.8	2.25	유3,초3,중2,고2	
	운동장	206,214.9	-	206,214.9	5.04	종합운동장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도시지원시설용지	문화체육시설	34,737.4	-	34,212.5	0.83	4개소
	공공공지	2,594.2	-	2,594.2	0.06	
	주유소	4,740.0	-	4,740.0	0.11	3개소
	종교용지	8,576.9	-	8,576.9	0.21	3개소
	전기공급시설	3,133.7	-	3,133.7	0.08	2개소
	통신시설	225.0	-	225.0	0.01	1개소
	사회복지시설	1,694.0	-	1,694.0	0.04	1개소
	하수도	2,273.9	-	2,273.9	0.06	오수중계펌프장2개소
	수도공급설비	4,489.3	-	4,489.3	0.11	배수지1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453.0	-	1,453.0	0.04	1개소
공원·녹지	소계	882,903.6	감)19,960	862,943.6	21.08	
	공원	729,039.9	감)19,960	709,079.9	17.32	저류지3개소포함
	녹지	153,863.7	-	153,863.7	3.76	
하천	소계	309,158.0	-	309,158.0	7.55	영천강,갈전천(375,363.0)
유수지	소계	22,922.0	-	22,922.0	0.56	유보지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계		-	232	126	47	50	9	41,038	15,273	12,704	11,508	1,553	777,593.3	238,764.9	282,880.0	227,048.9	28,899.5	
일반도로	계	-	160	87	34	32	7	37,761	14,103	11,713	10,429	1,516	751,375.9	230,659.4	275,543.6	216,385.4	28,787.5	
	대로	소계	-	10	1	7	1	1	11,523	2,224	6,151	3,084	64	338,157.5	85,005.0	166,574.0	84,810.0	1,768.5
		2	30~35	1	1	-	-	-	2,224	2,224	-	-	-	85,005.0	85,005.0	-	-	-
		3	25~34	9	-	7	1	1	9,299	-	6,151	3,084	64	253,152.5	-	166,574.0	84,810.0	1,768.5
	중로	소계	-	48	16	10	16	6	12,726	3,233	2,848	5,193	1,452	213,195.0	56,195.0	43,912.0	86,574.0	26,514.0
		1	20~23.5	15	7	2	6	-	6,019	2,044	1,009	2,856	110	121,744.5	40,880.0	20,180.0	58,104.0	2,580.5
		2	15~18.5	11	3	1	4	3	1,720	289	394	142	895	30,678.1	4,514.0	6,210.0	2,130.0	17,824.1
		3	12~15.0	23	6	7	7	3	5,212	900	1,445	2,420	447	63,853.4	10,801.0	17,522.0	29,421.0	6,109.4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반도로	소계	-	102	70	17	15	-	13,512	8,646	2,714	2,152	-	128,869.0	82,940.0	24,529.0	21,400.0	-
	1	10	70	44	12	14	-	11,948	7,766	2,060	2,122	-	119,480.0	77,660.0	20,600.0	21,220.0	-
	2	-	-	-	-	-	-	-	-	-	-	-	-	-	-	-	-
	3	6~7	32	26	5	1	-	1,564	880	654	30	-	9,389.0	5,280.0	3,929.0	180.0	-
	기타 (가각 및 구적오차)	-	-											71,154.4	65,194	40,528.6	23,601.4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71	39	13	17	2	3,052	1,170	991	854	37	23,136.4	8,105.5	7,336.4	7,582.5	112.0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대로	2	1	30~35	주간선도로	3,127 (2,224)	3,127 (2,224)	-	-	-	중1-11	20호광장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9	27.5	보조 간선도로	1,388	-	-	1,388	-	대2-1	대3-20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0	27.5~34	보조 간선도로	2,813	-	1,117	1,696	-	32호근린공원	대3-34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1	25	집산도로	64	-	-	-	64	대2-1	지방도1009호선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2	27.5	주간선도로	346	-	346	-	-	대2-1	대3-20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3	27.5	집산도로	211	-	211	-	-	대2-1	소로혁신3-73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4	27.5~43.5	주간선도로	1,296	-	1,296	-	-	대3-20	대3-34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5	27.5	보조 간선도로	852	-	852	-	-	대3-20	대3-24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6	27.5	보조 간선도로	1,297	-	1,297	-	-	대3-34	대3-25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4	25~34	보조 간선도로	1,032	-	1,032	-	-	혁신도시지구역계 (호탄동58-10)	대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0	20	보조 간선도로	484	219	-	265	-	대2-1	공공교육 사령부앞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1	20	집산도로	350	-	-	350	-	대2-1	대3-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485	485	-	-	-	대2-1	중1-6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3	20	집산도로	476	257	-	219	-	대2-1	중1-6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4	23.5	집산도로	281	-	-	281	-	대3-19	대3-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5	20	집산도로	760	416	-	344	-	대3-19	중1-67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6	20	집산도로	291	291	-	-	-	대3-20	대3-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7	20	집산도로	457	112	-	345	-	대3-19	단독주택용지 (E-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9	20	집산도로	222	-	-	222	-	중1-60	중1-63	일반도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중로	1	70	20	집산도로	115	-	-	5	110	중1-63	삼거리상회앞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1	20	집산도로	392	-	-	392	-	대3-20	대3-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2	20	보조 간선도로	437	264	173	-	-	대2-1	대3-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0	집산도로	324	-	324	-	-	대3-22	중1-7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512	-	512	-	-	대3-34	대3-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5	20	집산도로	433	-	-	433	-	대3-19	중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4	15	국지도로	114	99	-	15	-	대3-20	55호어린이공원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5	16.5	집산도로	319	119	200	-	-	대3-25	중1-7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6	15	집산도로	71	71	-	-	-	대3-22	중3-3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7	15	집산도로	194	-	194	-	-	대3-20	중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8	15	국지도로	33	-	-	33	-	대3-19	중3-8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9	15	국지도로	30	-	-	30	-	대3-19	중3-8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0	15	국지도로	29	-	-	29	-	대3-19	중3-8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35	-	-	35	-	중1-64	중3-8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2	18.5	국지도로	270	-	-	-	270	대3-26	중1-7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3	18.5	국지도로	438	-	-	-	438	중1-74	중2-7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4	18.5	국지도로	187	-	-	-	187	대3-26	산학연 클러스터용지(클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4	12	집산도로	1,116	-	-	1,116	-	대3-19	문산C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270	270	-	-	-	대3-20	2호수변공원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603	-	603	-	-	대3-24	대3-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172	-	172	-	-	대3-26	중2-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8	12	국지도로	185	-	185	-	-	중1-74	중2-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9	13.5	국지도로	121	-	121	-	-	대3-24	중3-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2	국지도로	146	102	-	44	-	중1-62	속사마을입구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3	12	국지도로	141	141	-	-	-	대3-25	중3-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4	12	국지도로	98	98	-	-	-	중2-65	중3-3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5	12	국지도로	159	159	-	-	-	중2-65	중3-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6	12	특수도로	162	-	-	162	-	2호수변공원	3호수변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중로	3	81	12	집산도로	130	130	-	-	-	중1-60	중1-6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2	12	집산도로	16	-	16	-	-	대3-34	혁신도시구역계 (호탄동산6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3	12	국지도로	266	-	266	-	-	중2-67	중2-6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4	12	국지도로	82	-	82	-	-	중2-67	소로혁신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5	12	국지도로	366	-	-	366	-	소로혁신1-76	소로혁신1-7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6	12	국지도로	160	-	-	160	-	중2-70	소로혁신1-7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7	12	국지도로	436	-	-	436	-	중2-71	중3-8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8	12	국지도로	22	-	-	22	-	대3-19	중3-8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9	12	국지도로	51	-	-	51	-	중1-65	소1-8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0	12	국지도로	122	-	-	-	122	대3-26	소로혁신3-1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1	12	국지도로	82	-	-	-	82	중3-90	단독주택용지 (E-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2	12	국지도로	243	-	-	-	243	중2-72	중2-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3	12~15.0	국지도로	225	-	-	225	-	중 - 62	충무공 184번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	10	국지도로	225	225	-	-	-	중3-40	37호주차장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	10	국지도로	158	158	-	-	-	중3-40	단독주택용지 (D-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	10	국지도로	337	337	-	-	-	중1-63	중1-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	10	국지도로	162	162	-	-	-	소로혁신1-3	소로혁신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	10	국지도로	51	51	-	-	-	소로혁신1-3	소로혁신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	10	국지도로	50	50	-	-	-	소로혁신1-3	소로혁신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	10	국지도로	109	109	-	-	-	소로혁신1-3	소로혁신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8	10	국지도로	196	196	-	-	-	중1-65	중1-6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9	10	국지도로	152	152	-	-	-	소로혁신1-8	소로혁신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0	10	국지도로	137	137	-	-	-	소로혁신1-11	소로혁신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1	10	국지도로	176	176	-	-	-	중1-65	중1-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2	10	국지도로	57	57	-	-	-	소로혁신1-11	소로혁신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3	10	국지도로	139	139	-	-	-	소로혁신1-11	소로혁신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4	10	국지도로	153	-	-	153	-	중3-86	중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2	10	국지도로	346	346	-	-	-	중2-64	소로혁신1-25	일반도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소로	혁신1	23	10	국지도로	66	66	-	-	-	소로혁신1-22	소로혁신1-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4	10	국지도로	56	56	-	-	-	소로혁신1-22	소로혁신1-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5	10	국지도로	115	115	-	-	-	중2-64	소로혁신1-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6	10	국지도로	197	-	197	-	-	대3-24	중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8	10	국지도로	211	211	-	-	-	소로혁신1-26	소로혁신1-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9	10	국지도로	541	-	541	-	-	대3-34	대3-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0	10	국지도로	467	467	-	-	-	대3-24	소로혁신1-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1	10	국지도로	39	39	-	-	-	소로혁신1-30	소로혁신1-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2	10	국지도로	163	163	-	-	-	중3-36	중3-39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3	10	국지도로	94	94	-	-	-	소로혁신1-32	소로혁신1-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4	10	국지도로	165	165	-	-	-	중3-36	중3-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5	10	국지도로	99	99	-	-	-	소로혁신1-34	소로혁신1-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6	10	국지도로	196	196	-	-	-	중3-35	중3-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7	10	특수도로	239	-	-	239	-	대2-1	중1-65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8	10	특수도로	196	91	-	105	-	중1-65	52호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9	10	특수도로	74	74	-	-	-	중1-67	41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0	10	특수도로	148	148	-	-	-	대3-24	37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1	10	국지도로	249	249	-	-	-	대3-26	대3-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2	10	국지도로	353	353	-	-	-	대3-26	대3-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3	10	국지도로	110	110	-	-	-	소로혁신1-42	소로혁신1-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4	10	국지도로	203	203	-	-	-	소로혁신1-42	소로혁신1-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5	10	국지도로	140	140	-	-	-	소로혁신1-28	소로혁신1-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6	10	국지도로	180	180	-	-	-	소로혁신1-42	소로혁신1-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7	10	국지도로	189	189	-	-	-	소로혁신1-42	소로혁신1-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8	10	국지도로	630	630	-	-	-	대3-24	소로혁신1-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9	10	국지도로	176	176	-	-	-	소로혁신1-57	소로혁신1-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0	10	국지도로	211	211	-	-	-	소로혁신1-48	소로혁신1-48	일반도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구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소로	혁신1	51	10	국지도로	32	32	-	-	-	소로혁신1-48	소로혁신1-5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2	10	국지도로	32	32	-	-	-	소로혁신1-50	소로혁신1-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3	10	국지도로	411	411	-	-	-	중1-65	중1-6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4	10	국지도로	60	60	-	-	-	소로혁신1-53	소로혁신1-5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5	10	국지도로	258	258	-	-	-	소로혁신1-53	소로혁신1-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6	10	국지도로	95	95	-	-	-	소로혁신1-53	소로혁신1-5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7	10	국지도로	149	149	-	-	-	중3-81	중1-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8	10	국지도로	267	267	-	-	-	소로혁신1-57	소로혁신1-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9	10	국지도로	55	55	-	-	-	소로혁신1-58	소로혁신1-58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0	10	국지도로	186	-	186	-	-	중2-67	중3-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1	10	국지도로	98	-	98	-	-	중3-84	소로혁신1-6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2	10	국지도로	214	-	214	-	-	소로혁신1-64	소로혁신1-6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3	10	국지도로	57	-	57	-	-	소로혁신1-64	소로혁신1-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4	10	국지도로	244	-	244	-	-	소로혁신1-62	소로혁신3-1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5	10	국지도로	15	-	15	-	-	중3-36	소로혁신1-6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6	10	국지도로	15	-	15	-	-	중3-36	소로혁신1-6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7	10	국지도로	248	-	248	-	-	소로혁신1-29	소로혁신1-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8	10	국지도로	132	-	132	-	-	소로혁신1-69	소로혁신1-69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9	10	국지도로	113	-	113	-	-	소로혁신1-67	소로혁신1-68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0	10	특수도로	14	-	-	14	-	소로혁신1-72	62호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1	10	국지도로	33	-	-	33	-	중3-85	소로혁신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2	10	국지도로	430	-	-	430	-	중3-85	소로혁신3-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3	10	국지도로	49	-	-	49	-	중3-85	소로혁신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4	10	국지도로	62	-	-	62	-	중3-85	소로혁신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5	10	국지도로	67	-	-	67	-	소로혁신1-74	소로혁신1-7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6	10	국지도로	88	-	-	88	-	중3-85	소로혁신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7	10	국지도로	276	-	-	276	-	중3-86	중3-86	일반도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구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소로	혁신1	78	10	국지도로	98	-	-	98	-	중3-86	소로혁신1-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9	10	국지도로	14	-	-	14	-	중3-34	소로혁신1-7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80	10	국지도로	199	-	-	199	-	소로혁신1-77	소로혁신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81	10	국지도로	104	-	-	104	-	중1-60	단독주택용지(D-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82	10	국지도로	235	-	-	235	-	63호어린이공원	단독주택용지(E-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83	10	국지도로	314	-	-	314	-	소로혁신1-14	소로혁신1-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2	2	8	특수도로	645	-	645	-	-	대2-1	소로혁신3-7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2	3	8	특수도로	15	-	15	-	-	중3-84	33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2	4	8	특수도로	21	-	-	21	-	중3-87	39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	6	국지도로	33	33	-	-	-	소로혁신1-1	단독주택용지(D-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	6	국지도로	52	52	-	-	-	소로혁신1-1	단독주택용지(D-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	6	국지도로	53	53	-	-	-	소로혁신1-1	단독주택용지(D-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4	6	국지도로	20	20	-	-	-	소로혁신1-1	단독주택용지(D-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5	6	국지도로	48	48	-	-	-	소로혁신1-2	36호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	6	국지도로	35	35	-	-	-	소로혁신1-2	단독주택용지(D-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	6	국지도로	20	20	-	-	-	소로혁신1-2	단독주택용지(D-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	6	국지도로	24	24	-	-	-	소로혁신1-3	단독주택용지(D-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0	6	국지도로	28	28	-	-	-	소로혁신1-30	소로혁신3-6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1	6	국지도로	27	27	-	-	-	소로혁신1-30	소로혁신3-6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2	6	국지도로	28	28	-	-	-	소로혁신1-30	소로혁신3-6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3	6	국지도로	28	28	-	-	-	소로혁신1-30	소로혁신3-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4	6	국지도로	26	26	-	-	-	단독주택용지(D-13)	소로혁신1-4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5	6	국지도로	25	25	-	-	-	단독주택용지(D-13)	소로혁신1-4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6	6	국지도로	25	25	-	-	-	단독주택용지(D-13)	소로혁신1-4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29	6	국지도로	36	36	-	-	-	소로혁신1-32	단독주택용지(D-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0	6	국지도로	35	35	-	-	-	소로혁신1-32	단독주택용지(D-11)	일반도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소로	혁신3	31	6	국지도로	35	35	-	-	-	소로혁신1-32	단독주택용지(D-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2	6	국지도로	50	50	-	-	-	소로혁신1-34	단독주택용지(D-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3	6	국지도로	50	50	-	-	-	소로혁신1-34	단독주택용지(D-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4	6	국지도로	50	50	-	-	-	소로혁신1-34	단독주택용지(D-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5	6	특수도로	14	14	-	-	-	소로혁신1-1	38호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6	6	특수도로	7	7	-	-	-	중1-60	소로혁신1-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7	6	특수도로	21	21	-	-	-	소로혁신1-3	41호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38	6	특수도로	107	107	-	-	-	중1-62	51호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40	6	특수도로	15	15	-	-	-	중1-63	소로혁신1-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41	6	특수도로	20	20	-	-	-	소로혁신1-3	41호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42	6	특수도로	12	12	-	-	-	중1-70	소로혁신1-7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43	6	특수도로	9	9	-	-	-	중1-65	소로혁신1-9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44	6	특수도로	19	19	-	-	-	소로혁신1-8	소로혁신1-3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45	6	특수도로	18	18	-	-	-	소로혁신1-10	소로혁신1-3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1	6	특수도로	17	17	-	-	-	소로혁신1-22	55호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2	6	특수도로	21	21	-	-	-	소로혁신1-30	37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4	3	특수도로	14	14	-	-	-	소로혁신3-20	37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5	3	특수도로	15	15	-	-	-	소로혁신3-21	37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6	3	특수도로	15	15	-	-	-	소로혁신3-22	37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7	3	특수도로	14	14	-	-	-	소로혁신3-23	37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8	6	특수도로	23	23	-	-	-	대3-24	중3-4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69	6	특수도로	47	47	-	-	-	대3-24	56호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0	6	특수도로	38	38	-	-	-	중3-36	56호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1	6	특수도로	25	25	-	-	-	대3-22	소로혁신1-3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2	6	특수도로	164	-	164	-	-	대3-25	35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3	6	국지도로	582	-	582	-	-	4호경관녹지	대3-23	일반도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구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소로	혁신3	75	6	국지도로	29	29	-	-	-	소로혁신1-41	단독주택용지(D-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6	6	국지도로	46	46	-	-	-	소로혁신1-41	단독주택용지(D-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7	6	국지도로	34	34	-	-	-	소로혁신1-41	단독주택용지(D-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8	6	국지도로	24	24	-	-	-	소로혁신1-41	단독주택용지(D-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79	6	국지도로	19	19	-	-	-	소로혁신1-47	단독주택용지(D-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0	6	특수도로	15	15	-	-	-	소로혁신1-41	34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1	6	특수도로	16	16	-	-	-	소로혁신1-41	34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2	6	특수도로	14	14	-	-	-	소로혁신1-46	34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4	6	특수도로	16	16	-	-	-	소로혁신1-47	34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5	6	특수도로	24	24	-	-	-	대3-20	소로혁신1-4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6	6	특수도로	22	22	-	-	-	소로혁신1-48	37호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7	6	특수도로	19	19	-	-	-	63호 어린이공원	소로혁신1-5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8	6	특수도로	35	35	-	-	-	소로혁신1-53	소로혁신1-5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89	6	특수도로	37	22	-	15	-	소로혁신1-53	대2-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0	6	특수도로	132	117	-	15	-	중1-65	대2-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1	6	특수도로	19	19	-	-	-	소로혁신1-55	소로혁신3-90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2	6	특수도로	13	13	-	-	-	소로혁신1-55	소로혁신3-90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3	6	특수도로	12	12	-	-	-	중1-69	소로혁신1-5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4	6	특수도로	15	15	-	-	-	소로혁신1-49	중1-60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5	6	특수도로	12	12	-	-	-	소로혁신1-44	소로혁신1-4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6	6	특수도로	15	15	-	-	-	중1-60	소로혁신1-49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7	6	특수도로	30	-	30	-	-	중3-83	33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8	6	국지도로	19	-	19	-	-	소로혁신1-60	단독주택용지(D-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99	6	국지도로	26	-	26	-	-	소로혁신1-60	33호근린공원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0	6	특수도로	27	-	27	-	-	대3-22	중3-8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1	6	특수도로	11	-	11	-	-	중3-36	소로혁신1-64	보행자 전용도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소로	혁신3	102	6	특수도로	6	-	6	-	-	소로혁신1-62	36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3	6	특수도로	12	-	12	-	-	소로혁신1-62	36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4	6	국지도로	22	-	22	-	-	소로혁신1-64	단독주택용지(D-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5	6	특수도로	11	-	11	-	-	중3-36	소로혁신1-6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6	6	특수도로	14	-	14	-	-	소로혁신1-67	34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7	6	특수도로	8	-	8	-	-	소로혁신1-68	34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8	6	특수도로	27	-	27	-	-	소로혁신1-29	소로혁신1-69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09	6	특수도로	12	-	12	-	-	소로혁신1-29	소로혁신1-67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0	7	국지도로	5	-	5	-	-	소로혁신1-29	혁신도시구역계(호탄동산8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1	6	특수도로	35	-	-	35	-	중3-85	62호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2	6	특수도로	30	-	-	30	-	대3-19	중3-85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3	6	특수도로	16	-	-	16	-	소로혁신1-72	62호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4	6	특수도로	18	-	-	18	-	소로혁신1-72	62호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5	6	국지도로	30	-	-	30	-	소로혁신1-72	소로혁신3-1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6	6	특수도로	10	-	-	10	-	중3-34	소로혁신3-115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7	6	특수도로	19	-	-	19	-	중3-34	중3-85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8	6	특수도로	13	-	-	13	-	중3-34	중3-8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19	6	특수도로	27	-	-	27	-	대3-19	중3-8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20	6	특수도로	13	-	-	13	-	소로혁신1-80	소로혁신1-1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21	6	특수도로	25	-	-	25	-	중3-87	39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22	6	특수도로	25	-	-	25	-	대3-19	중3-87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23	6	특수도로	20	-	-	20	-	소로혁신1-83	41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24	6	특수도로	32	-	-	32	-	소로혁신1-14	소로혁신1-8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25	3	특수도로	17	-	-	-	17	중3-90	47호완충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혁신3	126	3	특수도로	20	-	-	-	20	중3-91	34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주1) ()안 연장은 사업지구 내 연장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지구외 도로(지방도1009호선)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32	20~25	보조간선도로	7,963	대2-1	중1-32	일반도로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37	주차장	충무공동 167-1번지	736.1	736.1	-	-	-	
기정	38	주차장	충무공동 209-1번지	1,821.4	1,821.4	-	-	-	
기정	39	주차장	충무공동 198-11번지	1,006.6	1,006.6	-	-	-	
기정	41	주차장	충무공동 38-1번지	2,236.0	2,236.0	-	-	-	
기정	42	주차장	충무공동 116-4번지	793.0	793.0	-	-	-	
기정	43	주차장	충무공동 123-1번지	667.0	667.0	-	-	-	
기정	44	주차장	충무공동 138-11번지	1,782.5	1,782.5	-	-	-	
기정	45	주차장	충무공동 83-5번지	2,806.9	2,806.9	-	-	-	
기정	46	주차장	충무공동 85-4번지	1,169.6	1,169.6	-	-	-	
기정	47	주차장	충무공동 95-1번지	672.6	672.6	-	-	-	
기정	48	주차장	충무공동 287-3번지	1,593.8	1,593.8	-	-	-	
기정	49	주차장	충무공동 289-6번지	3,039.4	3,039.4	-	-	-	
기정	50	주차장	충무공동 314-11번지	591.1	591.1	-	-	-	
기정	54	주차장	충무공동 269-1번지	728.5	728.5	-	-	-	
기정	55	주차장	충무공동 167-27번지	1,345.5	1,345.5	-	-	-	
기정	64	주차장	충무공동 152-5번지	660.2	660.2	-	-	-	
기정	65	주차장	충무공동 48-19번지	670.5	670.5	-	-	-	
기정	66	주차장	충무공동 240-4번지	626.0	626.0	-	-	-	
기정	67	주차장	충무공동 29-5번지	1,250.2	-	1,250.2	-	-	
기정	68	주차장	충무공동 25-7번지	900.1	-	900.1	-	-	
기정	69	주차장	충무공동 63-20번지	868.1	-	868.1	-	-	
기정	70	주차장	충무공동 108-6번지	746.0	-	746.0	-	-	
기정	71	주차장	충무공동 319-1번지	1,218.2	-	-	1,218.2	-	
기정	72	주차장	충무공동 323-1번지	614.2	-	-	614.2	-	
기정	73	주차장	충무공동 337-1번지	659.2	-	-	659.2	-	
기정	74	주차장	충무공동 282-5번지	1,365.4	-	-	1,365.4	-	
기정	75	주차장	충무공동 184번지	13,115.5	-	-	-	13,115.5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28	광장	일반광장	충무공동 34번지	1,491.5	1,491.5	-	-	-	

2)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35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66번지	2,353.7	-	-	2,353.7	-	
기정	36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72번지	2,175.1	2,175.1	-	-	-	
기정	37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80번지	3,218.6	-	-	3,218.6	-	
기정	38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70번지	2,696.4	-	-	2,696.4	-	
기정	39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76번지	1,439.6	-	-	1,439.6	-	
기정	40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87번지	1,536.9	-	-	1,536.9	-	
기정	41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208번지	4,822.4	-	-	4,822.4	-	
기정	42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92번지	2,771.0	2,771.0	-	-	-	
기정	43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94번지	2,904.6	-	-	2,904.6	-	
기정	44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220번지	6,228.7	-	-	-	6,228.7	
기정	45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229번지	3,168.0	3,168.0	-	-	-	
기정	46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235번지	10,021.2	-	-	10,021.2	-	
기정	47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42번지	2,454.6	-	2,454.6	-	-	
기정	48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26번지	1,062.6	-	1,062.6	-	-	
기정	49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29번지	1,190.6	-	1,190.6	-	-	
기정	50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91번지	1,931.4	-	1,931.4	-	-	
기정	51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46번지	301.5	301.5	-	-	-	
기정	52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47번지	959.7	959.7	-	-	-	
기정	53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99번지	3,552.1	3,552.1	-	-	-	
기정	54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58번지	3,046.3	3,046.3	-	-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56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63번지	7,042.0	-	7,042.0	-	-	
기정	59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315번지	3,818.3	-	-	3,818.3	-	
기정	60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305번지	3,439.7	-	-	3,439.7	-	
기정	61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303번지	1,155.9	-	-	1,155.9	-	
기정	62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316번지	25,223.0	-	-	25,223.0	-	
기정	63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48번지	265.6	265.6	-	-	-	
기정	64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304번지	1,805.0	-	-	1,805.0	-	
기정	65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68번지	1,341.0	-	1,341.0	-	-	
기정	66	녹지	완충 녹지	충무공동 184-1번지	1,677.3	-	-	-	1,677.3	
기정	18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165-1번지	5,540.0	-	-	5,540.0	-	
기정	19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222-2번지	3,066.0	-	-	-	3,066.0	
기정	20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70번지	975.3	-	975.3	-	-	
기정	21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5번지	23,091.7	-	23,091.7	-	-	
기정	23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73번지	1,954.9	-	1,954.9	-	-	
기정	24	녹지	경관 녹지	충무공동 352번지	5,515.7	-	-	5,515.7	-	
기정	6	녹지	연결 녹지	충무공동 79번지	3,055.2	3,055.2	-	-	-	
기정	7	녹지	연결 녹지	충무공동 83-4번지	1,063.8	1,063.8	-	-	-	
기정	8	녹지	연결 녹지	충무공동 82-6번지	390.3	390.3	-	-	-	
기정	9	녹지	연결 녹지	충무공동 290번지	3,270.0	-	-	3,270.0	-	
기정	10	녹지	연결 녹지	충무공동 301번지	4,645.6	-	-	4,645.6	-	

3)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2	공원	수변 공원	충무공동 36번지 일원	15,752.0	-	15,752.0	-	15,752.0	-	-	
기정	3	공원	수변 공원	충무공동 224번지	10,402.7	-	10,402.7	-	-	10,402.7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4	공원	수변 공원	충무공동 291-1번지 일원	28,460.6	-	28,460.6	-	-	28,460.6	-	
기정	1	공원	문화 공원	충무공동 291번지	13,162.4	-	13,162.4	-	-	13,162.4	-	
기정	31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12번지	17,952.0	-	17,952.0	-	15,983.5	1,968.5	-	
기정	32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14번지 일원	25,330.0	-	25,330.0	-	25,330.0	-	-	
기정	33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21번지 일원	11,222.1	-	11,222.1	-	11,222.1	-	-	
기정	34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44번지	143,731.0	-	143,731.0	-	143,731.0	-	-	
기정	35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75번지	21,791.6	-	21,791.6	-	21,791.6	-	-	
기정	36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102번지	82,082.6	-	82,082.6	-	82,082.6	-	-	
기정	37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136번지 일원	87,270.1	-	87,270.1	-	87,270.1	-	-	
기정	38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227-3번지	10,631.1	-	10,631.1	-	-	10,631.1	-	
기정	39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285-1번지 일원	19,800.9	-	19,800.9	-	-	17,882.6	1,918.3	
기정	40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299번지	13,082.9	-	13,082.9	-	-	13,082.9	-	
변경	41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350번지 일원	128,512.2	감)19,960	108,552.2	-	-	-	108,552.2	
기정	50	공원	근린 공원	충무공동 183번지	67,517.5		67,517.5	-	-	67,517.5	-	
기정	1	공원	소공원	충무공동 40-1번지	1,558.3	-	1,558.3	1,558.3	-	-	-	
기정	2	공원	소공원	충무공동 225-6번지 일원	8,489.4	-	8,489.4	3,566.9	-	4,922.5	-	
기정	3	공원	소공원	충무공동 287-4번지	1,682.3	-	1,682.3	1,682.3	-	-	-	
기정	4	공원	소공원	충무공동 321-1번지	667.0	-	667.0	-	-	667.0	-	
기정	51	공원	어린이공원	충무공동 190-3번지	2,726.3	-	2,726.3	2,726.3	-	-	-	
기정	52	공원	어린이공원	충무공동 274번지	5,350.9	-	5,350.9	-	-	5,350.9	-	
기정	55	공원	어린이공원	충무공동 307-1번지	1,567.0	-	1,567.0	-	-	1,567.0	-	
기정	56	공원	어린이공원	충무공동 119-6번지	1,506.0	-	1,506.0	1,506.0	-	-	-	
기정	57	공원	어린이공원	충무공동 127번지	2,451.7	-	2,451.7	-	2,451.7	-	-	
기정	63	공원	어린이공원	충무공동 257번지	1,539.5	-	1,539.5	-	-	1,539.5	-	
기정	64	공원	어린이공원	충무공동 337-2번지	1,512.9	-	1,512.9	-	-	1,512.9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하안울공원	○ 면적변경 : A=128,512.2㎡ → 108,552.2㎡ (감)19,960㎡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인 근린공원41을 축소하여 공공기관 청사를 계획하여 고급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세 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3	공공공지	충무공동 287-8번지	1,428.8	1,428.8	-	-	-	
기정	4	공공공지	충무공동 289-5번지	760.6	760.6	-	-	-	
기정	5	공공공지	충무공동 249-1번지	404.8	-	-	404.8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10	수도공급설비	충무공동 349번지	4,489.3	4,489.3	-	-	-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4	전기공급설비	충무공동 6번지	254.2	-	254.2	-	-	송전탑
기정	7	전기공급설비	충무공동 165-2번지	2,879.5	-	-	2,879.5	-	변전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33	학교	초등학교	충무공동 190-1번지	11,719.9	11,719.9	-	-	-	
기정	34	학교	초등학교	충무공동 342번지	13,100.6	-	-	13,100.6	-	
기정	35	학교	초등학교	충무공동 125번지	12,057.0	-	12,057.0	-	-	
기정	38	학교	중학교	충무공동 273-1번지	13,954.9	-	-	13,954.9	-	
기정	39	학교	중학교	충무공동 76-1번지	13,749.6	-	13,749.6	-	-	
기정	40	학교	고등학교	충무공동 273-3번지	13,953.8	-	-	13,953.8	-	
기정	41	학교	고등학교	충무공동 128번지	13,608.0	-	13,608.0	-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2) 운동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3	운동장	충무공동 8번지	206,214.9	-	206,214.9	-	-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충무공동 112-2번지	1,694.0	1,694.0	-	-	-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8	하천	지방하천 (영천강)	충무공동 164번지 일원	333,660.0	-	-	333,660.0	-	대2-1(6,835㎡), 대3-20(10,766㎡), 중3-46(1,947㎡), 근1(2,653㎡), 근7(7,735㎡), 근12(3,006㎡), 수2(4,144㎡), 수3(5,308㎡), 수4(11,998㎡), 문화1(1,953㎡), 어5(238㎡), 완28(134㎡) 경4(38㎡)과 중복결정
기정	9	하천	지방하천 (갈전천)	충무공동 181번지 일원	43,727.0	-	-	43,727.0	-	중1-60(1,013㎡), 중3-40(424㎡), 근12(4,068㎡), 완3(690㎡), 완4(1,190㎡), 완5(719㎡), 완6(758㎡), 완7(1,024㎡), 경1(1,597㎡)과 중복결정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6	하수도	충무공동 185번지	430.2	430.2	-	-	-	오수중계펌프장
기정	9	하수도	충무공동 9번지	1,843.7	-	1,843.7	-	-	오수중계펌프장

Ⅲ.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D-1	①	8,877.2	-1	299.3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16.4		
				-3	328.0		
				-4	340.4		
				-5	318.0		
				-6	331.0		
				-7	352.0		
				-8	331.0		
				-9	330.0		
				-10	331.0		
				-11	337.1		
				-12	322.7		
				-13	312.6		
				-14	329.9		
				-15	330.0		
				-16	330.0		
				-17	329.9		
				-18	324.5		
				-19	336.2		
				-20	374.1		
				-21	356.0		
				-22	326.0		
				-23	340.0		
				-24	300.0		
				-25	329.1		
				-26	328.0		
				-27	294.0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m ²)			
		②	1,229.6	-1	320.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24.7			
				-3	323.0			
				-4	261.0			
		③	2,409.6	-1	250.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7.1			
				-3	281.5			
				-4	295.7			
				-5	271.2			
				-6	277.9			
				-7	264.7			
				-8	259.7			
				-9	241.4			
기정	D-2	①	572.9	-1	286.8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2	286.1			
		②	4,510.5	-1	296.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38.2			
				-3	249.2			
				-4	260.2			
				-5	259.7			
				-6	233.3			
				-7	309.1			
				-8	244.3			
				-9	232.9			
				-10	280.7			
				-11	261.2			
				-12	277.7			
				-13	231.5			
				-14	257.7			
				-15	226.2			
-16	290.4							
-17	361.5							
③	2,853.1	-1	307.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8.6					
		-3	273.3					
		-4	278.7					
		-5	281.6					
		-6	285.1					
		-7	283.8					
		-8	284.7					
		-9	285.7					
		-10	304.6					
기정	D-3	①	1,612.0	-1	312.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25.4			
				-3	325.4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4	324.4		
				-5	324.4		
		②	624.0	-1	299.5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24.5		
		③	1,665.8	-1	323.4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22.6		
				-3	335.9		
				-4	336.1		
				-5	347.8		
		④	1,981.9	-1	328.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35.0		
				-3	327.9		
				-4	328.0		
				-5	335.0		
				-6	328.0		
		⑤	1,938.4	-1	330.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12.9		
				-3	302.9		
				-4	339.9		
				-5	329.9		
				-6	321.9		
		⑥	2,265.1	-1	309.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17.9		
				-3	345.9		
				-4	344.8		
				-5	289.9		
				-6	358.9		
				-7	297.9		
		⑦	4,699.9	-1	308.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33.2		
				-3	333.2		
				-4	332.2		
				-5	333.2		
				-6	334.2		
				-7	335.2		
				-8	358.2		
				-9	336.2		
				-10	260.2		
				-11	421.2		
				-12	354.3		
				-13	314.2		
				-14	346.2		
		⑧	1,947.9	-1	330.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30.2		
				-3	330.1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D-4			-4	330.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5	320.2				
				-6	307.1				
		⑨	954.0	-1	318.0				
				-2	318.0				
				-3	318.0				
		①	1,827.6	-1	241.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0.6				
				-3	263.7				
				-4	262.6				
				-5	264.7				
				-6	261.6				
				-7	272.7				
②	1,658.6			-1	263.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80.0				
				-3	270.9				
				-4	295.6				
				-5	281.5				
		-6	267.6						
③	3,026.2	-1	252.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52.5						
		-3	252.8						
		-4	252.9						
		-5	251.9						
		-6	255.9						
		-7	248.8						
		-8	252.0						
		-9	251.6						
		-10	252.1						
		-11	251.7						
		-12	251.8						
④	1,618.6	-1	270.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0.1						
		-3	270.1						
		-4	270.1						
		-5	269.1						
		-6	269.1						
기정	D-5	①	2,135.9	-1	273.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1.0				
				-3	261.0				
				-4	261.0				
				-5	261.0				
				-6	281.0				
				-7	278.9				
				-8	259.0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②	1,690.1	-1	267.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82.5		
				-3	266.6		
				-4	283.6		
				-5	302.4		
				-6	287.5		
		③	1,898.6	-1	257.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7.8		
				-3	277.8		
				-4	254.8		
				-5	269.8		
				-6	287.8		
				-7	272.8		
		④	533.0	-1	266.0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2	267.0		
		⑤	2,482.2	-1	270.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8.5		1단계
				-3	278.5		
				-4	277.4		
				-5	278.5		
				-6	278.4		
				-7	278.4		
				-8	278.5		
				-9	263.5		
기정	D-9	①	533.9	-1	267.0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2	266.9		
		②	1,913.2	-1	272.6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3.5		
				-3	271.8		
				-4	274.3		
				-5	273.3		
				-6	272.5		
		-7	275.2				
		③	3,252.0	-1	268.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1.7		
				-3	268.2		
				-4	271.4		
				-5	272.4		
				-6	264.1		
				-7	272.3		
				-8	272.6		
				-9	272.6		
-10	272.5						
-11	272.5						
-12	272.8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④	1,061.0	-1	266.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5.1				
				-3	264.9				
				-4	264.8				
		⑤	2,208.0	-1	309.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6.0				
				-3	275.9				
				-4	275.3				
				-5	275.7				
				-6	275.8				
				-7	275.7				
				-8	244.1				
		⑥	1,350.1	-1	268.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1.0				
				-3	269.6				
				-4	268.5				
				-5	272.5		1단계		
		⑦	3,116.4	-1	262.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59.0				
				-3	257.9				
				-4	258.1				
				-5	259.0				
				-6	259.0				
				-7	259.1				
				-8	258.8				
				-9	260.0				
				-10	259.7				
				-11	260.1				
-12	262.9								
기정	D-10	①	1,876.6	-1	262.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6.0				
				-3	269.0				
				-4	269.0				
				-5	268.0				
				-6	270.6				
				-7	272.0				
		②	1,115.4	-1	279.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5.0				
				-3	283.0				
				-4	288.0				
		③	6,825.2	-1	290.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0.0				
				-3	289.0				
				-4	286.2				
				-5	309.7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6	287.0								
				-7	290.0								
				-8	291.0								
				-9	281.0								
				-10	290.0								
				-11	298.0								
				-12	305.7								
				-13	311.4								
				-14	287.0								
				-15	290.0								
				-16	290.0								
				-17	308.0								
				-18	312.0								
				-19	322.0								
				-20	321.4								
				-21	282.6								
				-22	296.6								
				-23	296.6								
								④	533.3	-1	266.3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2	267.0		
				기정	D-11			①	530.5	-1	265.1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2	265.4		
								②	1,940.9	-1	325.0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25.0		
-3	325.9												
-4	320.0												
-5	323.0												
-6	322.0												
③	1,337.0	-1	266.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8.0										
		-3	267.0										
		-4	268.0										
		-5	268.0										
④	4,880.7	-1	290.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8.8										
		-3	301.7										
		-4	275.6										
		-5	268.0										
		-6	268.0										
		-7	268.0										
		-8	268.0										
		-9	275.6										
		-10	260.7										
		-11	260.0										
		-12	261.0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D-12	①	1,125.7	-13	260.0		
				-14	260.0		
				-15	259.0		
				-16	300.6		
				-17	264.0		
				-18	261.0		
		②	1,324.3	-1	277.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9.3		
				-3	283.6		
				-4	285.6		
		③	1,661.1	-1	258.6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2.1		
				-3	266.6		
				-4	275.0		
		④	1,664.5	-5	262.0		
				-1	300.4		
				-2	272.8		
				-3	265.6		
		⑤	1,664.5	-4	256.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5	268.5		
				-6	297.1		
				-1	282.5		
		⑥	832.1	-2	263.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3	286.3		
				-4	274.2		
				-5	268.6		
		⑦	2,125.2	-6	289.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1	272.1		
-2	276.4						
-3	283.6						
⑧	3,325.3	-1	334.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9.7				
		-3	263.8				
		-4	254.3				
		-5	245.6				
		-6	242.7				
		-7	249.8				
		-8	255.1				
⑨	3,325.3	-1	256.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5.2				
		-3	270.5				
		-4	297.3				
		-5	265.2				
		-6	252.2				
		-7	294.5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8	280.0								
				-9	300.3								
				-10	282.2								
				-11	274.2								
				-12	287.7								
				⑧	2,652.8				-2	331.8	분할·합병 불허	1단계	
									-3	331.7			
									-4	331.7			
									-5	331.8			
									-6	331.8			
									-7	331.8			
									-8	331.8			
									-9	330.4			
									⑨	785.1			
				-2	262.4								
				-3	262.6								
				기정	D-13			①	1,917.2	-1	320.2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20.2		
										-3	319.2		
										-4	319.2		
-5	319.2												
-6	319.2												
②	1,961.0		-1			325.0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27.0							
			-3			325.0							
			-4			326.0							
			-5			332.0							
③	3,533.7		-1			256.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57.9							
			-3			253.9							
			-4			247.9							
			-5			249.9							
			-6			254.9							
			-7			251.9							
			-8			251.9							
			-9			250.9							
			-10	250.9									
			-11	251.9									
			-12	252.9									
			-13	251.0									
			-14	250.9									
④	4,659.6		-1	264.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49.1									
			-3	256.5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4	250.8								
				-5	244.8								
				-6	239.2								
				-7	240.8								
				-8	240.3								
				-9	233.1								
				-10	236.7								
				-11	240.5								
				-12	232.8								
				-13	301.9								
				-14	238.0								
				-15	240.0								
				-16	238.0								
				-17	237.0								
				-18	238.0								
				-19	238.0								
				기정	D-14			①	2,300.3	-1	279.3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87.2		
										-3	287.1		
										-4	283.6		
-5	286.9												
-6	291.3												
-7	291.1												
-8	293.8												
		②	3,090.7			-1	250.6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57.8						
						-3	257.5						
						-4	257.8						
						-5	258.5						
						-6	249.0						
						-7	257.8						
						-8	261.3						
						-9	261.4						
						-10	261.4						
						-11	261.6						
						-12	256.0						
						③	2,925.1	-1	269.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1.1				
								-3	271.0				
								-4	270.8				
				-5	270.5								
				-6	261.3								
				-7	266.1								
				-8	261.6								
				-9	261.7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④	3,345.8	-10	260.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11	260.6		
				-1	272.3		
				-2	279.1		
				-3	280.6		
				-4	280.9		
				-5	280.8		
				-6	274.5		
				-7	276.9		
				-8	283.1		
				-9	281.0		
				-10	280.7		
				-11	280.8		
				-12	275.1		
-2	241.2						
-3	241.6						
-4	241.3						
-5	241.5						
-6	241.7						
-7	243.4						
-8	248.2						
-9	241.1						
-10	240.8						
-11	240.5						
-12	241.1						
-13	241.7						
-14	244.1						
		⑥	1,712.2	-1	243.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45.1		
				-3	244.9		
				-4	245.4		
				-5	244.4		
				-6	244.5		
				-7	244.2		
		⑦	1,165.0	-1	288.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3.8		
				-3	288.3		
				-4	294.1		
기정	D-15	①	2,810.2	-1	233.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34.1		
				-3	234.4		
				-4	233.3		
				-5	233.7		
				-6	233.9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7	233.0						
				-8	295.5						
				-9	294.4						
				-10	297.8						
				-11	286.7						
				②	2,438.2			-1	305.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4.9		
								-3	326.2		
								-4	319.3		
								-5	283.2		
								-6	294.6		
			-7			295.6					
			-8			318.5					
			③	1,531.8	-1	256.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56.0					
					-3	256.2					
					-4	253.6					
					-5	253.6					
					-6	256.0					
			④	2,306.4	-1	328.1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29.9					
					-3	330.1					
					-4	331.2					
					-5	329.1					
					-6	329.8					
					-7	328.2					
			⑤	2,664.3	-1	340.9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44.4					
					-3	341.4					
					-4	326.3					
					-5	326.0					
					-6	327.4					
					-7	328.7					
-8	329.2										
⑥	1,289.3	-1	327.4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20.6								
		-3	320.6								
		-4	320.7								
⑦	3,507.4	-1	318.2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17.8								
		-3	318.8								
		-4	319.6								
		-5	318.7								
		-6	319.4								
		-7	318.6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⑧	3,608.9	-8	319.4	분할·합병 불허	1단계						
				-9	318.9								
				-10	319.3								
				-11	318.7								
				-1	326.8								
				-2	328.6								
				-3	328.9								
				-4	321.1								
				-5	338.1								
				-6	328.6								
				-7	333.3								
				-8	333.8								
				-9	324.0								
				-10	332.3								
				-11	313.4								
								⑨	2,343.8	-1	333.6	분할·합병 불허	1단계
										-2	334.9		
										-3	335.2		
										-4	334.9		
-5	334.6												
-6	335.1												
-7	335.5												
		⑩	1,394.6	-1	263.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63.8								
				-3	264.0								
				-4	264.1								
				-5	339.0								
기정	D-16	①	4,159.8	-1	286.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86.5								
				-3	301.2								
				-4	304.7								
				-5	301.7								
				-6	282.2								
				-7	283.3								
				-8	285.7								
				-9	277.9								
				-10	276.0								
				-11	330.9								
				-12	324.7								
				-13	298.4								
				-14	319.8								
		②	2,406.3	-1	300.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00.0								
				-3	301.4								
				-4	300.1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m ²)					
				-5	301.4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6	301.7					
				-7	302.0					
				-8	299.6					
		③	5,484.5	-1	285.6					
				-2	303.4					
				-3	303.1					
				-4	275.2					
				-5	284.2					
				-6	302.2					
				-7	276.5					
				-8	332.2					
				-9	331.8					
				-10	293.6					
				-11	394.9					
				-12	287.4					
				-13	289.4					
				-14	324.4					
		-15	309.5							
		-16	287.6							
-17	301.6									
-18	301.9									
④	922.1	-1	308.9							
		-2	307.5							
		-3	305.7							
D-17	①	2,533.0	-1	283.6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83.5						
			-3	281.5						
			-4	280.5						
			-5	281.5						
			-6	280.5						
			-7	280.7						
			-8	280.6						
			-9	280.6						
			②	1,489.9			-1	305.2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6.2		
							-3	296.2		
							-4	296.1		
							-5	296.2		
③	895.0	-1	293.0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7.0							
		-3	305.0							
④	3,090.9	-1	321.7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12.8							
		-3	314.7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4	291.7			
				-5	314.4			
				-6	314.7			
				-7	319.7			
				-8	291.8			
				-9	291.9			
				-10	317.5			
		⑤	2,930.0	-1	292.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3.9
					-3			292.9
					-4			300.9
					-5			300.9
					-6			295.9
					-7			300.9
					-8			259.9
					-9			310.9
					-10			280.9
		⑥	1,862.8	-1	311.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09.7
					-3			310.0
					-4			311.8
					-5			309.9
					-6			309.7
		⑦	2,429.2	-1	304.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1.2
					-3			287.0
					-4			315.0
					-5			304.0
					-6			304.0
					-7			304.0
					-8			320.0
		⑧	2,176.8	-1	272.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72.1
					-3			272.1
					-4			272.1
					-5			272.1
					-6			272.1
					-7			272.1
					-8			272.1
		⑨	1,000.8	-1	332.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34.3
					-3			334.3
		⑩	4,848.8	-1	296.6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1단계	
					-2			294.6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3	296.6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95.6								
				-5	292.6								
				-6	298.6								
				-7	296.7								
				-8	299.7								
				-9	352.6								
				-10	303.6								
				-11	303.6								
				-12	303.6								
				-13	303.7								
				-14	303.6								
				-15	303.6								
				-16	303.5								
				기정	D-18			①	1,047.4	-1	348.5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349.5		
-3	349.4												
②	1,465.1	-1	293.8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2.9										
		-3	292.8										
		-4	292.8										
		-5	292.8										
③	2,940.1	-1	293.9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3.9										
		-3	293.8										
		-4	293.8										
		-5	293.8										
		-6	293.7										
		-7	293.9										
		-8	293.7										
		-9	294.8										
		-10	294.8										
④	3,028.0	-1	311.7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8.7										
		-3	298.7										
		-4	298.7										
		-5	298.7										
		-6	311.7										
		-7	315.7										
		-8	289.7										
		-9	304.7										
		-10	299.7										
⑤	2,103.3	-1	284.9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1단계								
		-2	290.9										
		-3	325.9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4	305.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5	289.9		
				-6	301.9		
				-7	303.9		
		⑥	3,248.3	-1	294.3		
				-2	291.3		
				-3	298.3		
				-4	295.3		
				-5	295.3		
				-6	295.3		
				-7	295.3		
				-8	295.3		
				-9	295.3		
				-10	295.3		
				-11	297.3		
		⑦	2,068.6	-1	295.9		
				-2	297.0		
				-3	316.9		
				-4	315.9		
				-5	283.0		
-6	282.9						
-7	277.0						
기정	D-19	①	1,774.0	-1	303.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306.7		
				-3	323.2		
				-4	277.1		
				-5	261.2		
				-6	302.0		
		②	2,939.1	-1	329.5		
				-2	291.1		
				-3	290.5		
				-4	290.5		
				-5	290.5		
				-6	290.5		
				-7	290.5		
				-8	290.5		
				-9	290.5		
				-10	285.0		
		③	2,810.7	-1	282.4		
				-2	279.5		
				-3	279.6		
				-4	279.4		
-5	279.7						
-6	281.8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D-20			-7	281.4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8	281.3				
				-9	281.2				
				-10	284.4				
		④	1,383.5	-1	279.0				
				-2	276.2				
				-3	276.2				
				-4	276.0				
				-5	276.1				
		①	706.7	-1	353.5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2단계
				-2	353.2				
		②	2,211.3	-1	291.2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91.9				
				-3	280.8				
				-4	280.8				
				-5	268.9				
				-6	268.5				
				-7	265.0				
				-8	264.2				
		③	3,780.5	-1	269.0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60.6								
-3	260.3								
-4	260.1								
-5	297.8								
-6	299.4								
-7	289.0								
-8	287.5								
-9	319.5								
-10	308.2								
-11	309.1								
-12	309.9								
-13	310.1								
④	1,650.5	-1	275.7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74.6						
		-3	274.6						
		-4	277.2						
		-5	275.8						
		-6	272.6						
⑤	1,462.2	-1	290.1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78.6						
		-3	278.7						
		-4	285.1						
		-5	329.7						
⑥	947.9	-1	337.8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2단계				
		-2	316.5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⑦	703.2	-3	293.6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1	228.0				
				-2	241.0				
				-3	234.2				
		⑧	1,651.0	-1	274.6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74.7				
				-3	273.8				
				-4	273.9				
				-5	273.4				
				-6	280.6				
		기정	D-21	①	1,485.0	-1	268.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40.0		
						-3	240.0		
						-4	240.0		
-5	240.0								
-6	257.0								
②	1,644.3			-1	277.3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74.0				
				-3	274.0				
				-4	274.0				
				-5	273.0				
				-6	272.0				
③	2,843.0			-1	346.3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35.0				
				-3	256.0				
				-4	337.0				
				-5	315.0				
				-6	361.0				
				-7	416.7				
				-8	288.0				
				-9	288.0				
④	1,279.0			-1	255.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55.8				
				-3	255.8				
				-4	255.8				
				-5	255.8				
⑤	1,437.5			-1	286.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292.1				
		-3	295.1						
		-4	295.1						
		-5	269.1						
⑥	485.8	-1	240.0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2단계				
		-2	245.8						
⑦	1,782.4	-1	299.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2단계				
		-2	283.0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3	312.0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96.3								
				-5	280.1								
				-6	312.0								
				⑧	2,146.4			-1	293.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2단계		
				-2	351.0								
				-3	269.0								
				-4	314.0								
				-5	329.4								
				-6	294.0								
				-7	296.0								
				기정	D-22			①	2,214.7	-1	309.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309.4		
										-3	309.4		
-4	309.4												
-5	327.1												
-6	324.0												
-7	326.0												
②	2,086.8	-1	251.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51.8										
		-3	250.0										
		-4	250.7										
		-5	259.6										
		-6	273.7										
		-7	280.8										
		-8	268.8										
		③	1,331.6					-1	323.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306.1				
								-3	382.1				
-4	319.5												
④	3,293.9	-1	309.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99.8										
		-3	282.6										
		-4	280.6										
		-5	294.6										
		-6	303.0										
		-7	329.9										
		-8	340.9										
		-9	284.1										
		-10	284.0										
		-11	285.0										
⑤	2,787.5	-1	279.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79.0										
		-3	279.0										
		-4	278.9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5	277.9						
				-6	277.9						
				-7	279.0						
				-8	279.1						
				-9	279.1						
				-10	278.6						
				⑥	2,139.2			-1	266.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67.0		
								-3	266.9		
								-4	267.0		
		-5	268.0								
		-6	268.0								
		-7	267.9								
		-8	267.7								
		⑦	2,535.5	-1	280.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81.0						
				-3	282.0						
				-4	282.0						
				-5	282.0						
				-6	282.0						
				-7	282.0						
				-8	282.0						
				-9	282.1						
		⑧	2,503.6	-1	306.6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307.0						
				-3	308.1						
				-4	307.2						
				-5	306.4						
				-6	305.0						
				-7	307.1						
				-8	356.2						
		⑨	2,274.9	-1	296.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71.8										
-3	302.6										
-4	270.9										
-5	322.0										
-6	270.9										
-7	269.9										
-8	269.9										
기정	D-23	①	3,541.1	-1	298.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98.7						
				-3	298.7						
				-4	298.7						
				-5	298.4						
				-6	291.5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7	278.9							
				-8	298.6							
				-9	298.9							
				-10	298.9							
				-11	299.0							
				-12	282.4							
				②	2,222.3				-1	277.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65.4		
									-3	300.7		
									-4	269.7		
									-5	268.5		
									-6	301.7		
									-7	276.9		
									-8	261.9		
				③	2,726.0				-1	271.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71.9		
									-3	273.0		
									-4	272.8		
									-5	272.7		
									-6	272.7		
									-7	273.0		
									-8	273.0		
									-9	273.0		
									-10	272.4		
				④	2,685.6				-1	269.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69.5		
									-3	269.5		
									-4	261.3		
									-5	257.5		
									-6	252.4		
									-7	280.8		
									-8	279.3		
-9	266.1											
-10	279.3											
⑤	1,259.0		-1	318.6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311.2								
			-3	311.1								
			-4	318.1								
⑥	1,221.3		-1	236.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35.0								
			-3	255.0								
			-4	258.0								
			-5	236.5								
⑦	583.5		-1	282.4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3단계						
			-2	301.1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⑧	1,417.7	-1	243.8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37.7						
				-3	232.7						
				-4	233.1						
				-5	238.0						
				-6	232.4						
		⑨	2,599.2	-1	290.8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90.6						
				-3	291.1						
				-4	291.0						
				-5	277.5						
				-6	292.9						
		⑩	866.4	-1	288.0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2	289.0						
				-3	289.4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1	315.4						
				-2	319.9						
-3	320.0										
-4	319.9										
-5	319.8										
-6	323.5										
-7	301.4										
-8	303.4										
-9	302.8										
-10	302.8										
-11	302.5										
-12	303.0										
-13	299.4										
기정	D-24	①	4,033.8	-1	315.4	필지분할 불허(단, 연결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결한 2개필지 합병허용	3단계				
		필지분할가능	4단계								
기정	E-3			E-3	31,791.0			-1	31,791.0	필지분할가능	4단계
기정	E-4			E-4	48,708.3			-1	48,708.3	필지분할가능	2단계
기정	E-8			E-8	2,365.1			-1	2,365.1	필지분할가능	3단계
기정	E-9			E-9	3,845.3			-1	3,845.3	필지분할가능,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합병허용	3단계
기정	E-10			E-10	7,538.1			-1	7,538.1	필지분할가능,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합병허용	3단계
기정	E-11			E-11	9,223.7			-1	9,223.7	필지분할가능,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합병허용	3단계
기정	E-12			E-12	5,409.3			-1	5,409.3	필지분할가능,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합병허용	3단계
기정	E-13			E-13	6,890.0			-1	6,890.0	필지분할가능,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합병허용	3단계
기정	E-14			E-14	7,178.1			-1	7,178.1	필지분할가능,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합병허용	3단계
기정	E-15			E-15	8,051.2			-1	8,051.2	필지분할가능	4단계
기정	E-16			E-16	8,431.7			-1	8,431.7	필지분할가능	4단계
기정	E-17			E-17	5,133.9	-1	5,133.9	필지분할가능	4단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기정	A-1	A-1	45,549.8	A-1	45,549.8	아파트 필지분할·합병 불허(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분할 가능)	1단계
기정	A-2	A-2	26,500.6	A-2	26,500.6		3단계
기정	A-3	A-3	37,029.6	A-3	37,029.6		4단계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기정	A-4	A-4	64,597.8	A-4	64,597.8		1단계
기정	A-5	A-5	38,108.5	A-5	38,108.5		3단계(임대)
기정	A-6	A-6	50,883.9	A-6	50,883.9		3단계
기정	A-7	A-7	46,568.6	A-7	46,568.6		3단계
기정	A-8	A-8	37,701.2	A-8	37,701.2		3단계(공분)
기정	A-9	A-9	27,964.3	A-9	27,964.3		3단계(공분)
기정	A-10	A-10	24,022.6	A-10	24,022.6		3단계
기정	A-11	A-11	38,827.0	A-11	38,827.0		1단계(임대)
기정	A-12	A-12	76,581.0	A-12	76,581.0		2단계
기정	A-13	A-13	89,576.4	A-13	89,576.4		1단계

2)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기정	C-1	C-1	7,965	C-1	7,965	필지분할·합병 불허 단,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가능	2단계
기정	C-2	C-2	22,461.6	C-2	22,461.6		3단계
기정	C-3	C-3	11,593.9	C-3	11,593.9		3단계
기정	C-4	C-4	15,155.1	C-4	15,155.1		3단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기정	근생1	①	2,432.1	-1	620.0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1단계
				-2	598.0		
				-3	621.0		
				-4	593.1		
		②	685.5	-1	685.5	필지분할 불가	1단계
기정	근생2	①	2,849.6	-1	949.8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2단계
				-2	950.0		
				-3	949.8		
기정	근생3	①	837.4	-1	837.4	필지분할 불가	3단계
		②	3,105.7	-1	697.3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3단계
				-2	702.3		
				-3	783.9		
		-4	922.2				
기정	근생4	①	2,530.3	-1	866.0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3단계
				-2	857.1		
				-3	807.2		
		②	2,246.7	-1	694.0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3단계
				-2	775.0		
				-3	777.7		
		③	1,774.9	-1	887.5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3단계
				-2	887.4		

라.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1) 이전공공기관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기정	이전1	-	24,000.0	충무공동 16-3번지	24,000.0	국방기술품질원	1단계
기정	이전2	-	16,507.0	충무공동 16-4번지	16,507.0	중소기업진흥공단	1단계
기정	이전4	-	24,500.0	충무공동 15-4번지	24,500.0	한국세라믹기술원	1단계
기정	이전5	-	13,512.5	충무공동 286번지	13,512.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단계
기정	이전6	-	10,318.2	충무공동 225-9번지	10,318.2	한국시설안전공단	3단계
기정	이전9	-	97,142.0	충무공동 227-2번지 일원	97,142.0	한국토지주택공사	3단계
기정	이전10	-	6,000.0	충무공동16-1번지	6,000.0	중앙관세분석소	1단계
기정	이전11	-	32,289.2	충무공동 225-5번지	32,289.2	한국남동발전	1단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기정	이전13	-	17,190.8	충무공동 348-1번지	17,190.8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택용지	3단계
기정	이전14	-	4,632.1	충무공동 348-2번지	4,632.1	한국남동발전 사택용지	3단계
기정	이전15	-	2,125.6	충무공동 87-2 번지	2,125.6	이전기관용지	4단계
신설	이전16	-	10,000	충무공동 350번지	10,000	이전기관용지	
신설	이전17	-	9,960	충무공동 350번지	9,960	이전기관용지	

2)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기정	클1	클1	16,915.0	-1	10,915.0		4단계
				-2	6,000.0		2단계
기정	클2	클2	6,780.0	-1	3,390.0		1단계
				-2	3,390.0		
기정	클3	클3	10,725.0	-1	5,765.0		1단계
				-2	4,960.0		
기정	클4	클4	58,297.4	-1	13,496.1		4단계
				-2	13,487.6		
				-3	16,308.6		
				-4	7,509.4		
				-5	7,495.7		
기정	클5	①	9,429.5	-1	2,129.6		4단계
				-3	2,125.8		
				-4	1,869.0		
				-5	1,654.4		
				-6	1,650.7		
	클5	②	8,596.6	-1	2,039.8		4단계
				-2	1,640.8		
				-3	1,645.8		
				-4	1,682.9		
				-5	1,587.3		
	클5	③	25,854.0	-1	5,545.1		4단계
				-2	4,813.0		
-3				3,994.5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4	3,998.8		
				-5	3,690.6		
				-6	3,812.0		
		④	52,860.7	-1	5,490.5		4단계
				-2	5,251.0		
				-3	11,783.9		
				-4	4,006.3		
				-5	7,716.8		
				-6	5,148.0		
				-7	4,294.8		
				-8	4,599.3		
				-9	4,570.1		
기정	클7	클7	4,200.8	-1	4,200.8		2단계
기정	클8	클8	16,915.0	-1	16,915.0		2단계
기정	클9	클9	5,313.0	-1	5,313.0		4단계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1) 상업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상1	①	3,493.2	-1	885.3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881.3		
				-3	858.3		
				-4	868.3		
기정	상2	①	14,987.2	-1	14,987.2	필지분할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1단계
기정	상3	①	4668.5	-1	1,121.3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1,888.4		
				-3	829.7		
				-4	829.1		
	②	2,604.1	-1	868.2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868.1			
			-3	867.8			
			-4	867.8			
③	2,526.1	-1	1,269.7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1,256.4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상4	①	2,888.4	-1	1,380.4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1,508.0			
		②	4,812.5	-1	1,507.0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1,686.0			
				-3	1,619.5			
		③	2,169.0	-1	1,139.5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1,029.5				
	기정	④	4,972.1	-1	1,237.5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1,248.9			
				-3	1,228.6			
				-4	1,257.1			
	기정	상5	①	20,865.1	-1	20,865.1	필지분할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기정	상6	①	6,290.5	-1	2,185.3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1,699.5			
				-3	801.8			
				-4	801.9			
				-5	802.0			
		②	2,694.1	-1	891.0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909.0			
				-3	894.1			
		③	3,315.0	-1	1,043.3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1,046.3			
	④	4,007.6	4,007.6	-1	785.1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1단계	
				-2	811.1			
				-3	947.2			
				-4	1,464.2			

2) 업무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기정	업무1	①	6,353.4	-1	1,470.1	필지분할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2	1,584.6		
				-3	3,298.7		
기정	업무2	①	1,955.5	-1	1,955.5	필지분할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1단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기정	업무3	①	2,721.6	-1	905.3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2단계
				-2	907.2		
				-3	909.1		
		②	5,272.7	-1	1,093.1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2단계
				-2	1,075.2		
				-3	934.7		
				-4	1,075.4		
		③	3,660.0	-1	901.3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2단계
				-2	895.3		
				-3	895.9		
		④	3,330.9	-1	1,139.8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2단계
				-2	1,095.6		
-3	1,095.5						
기정	업무4	①	3,338.8	-1	1,037.7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2	1,157.0		
				-3	1,144.1		
		②	4,309.5	-1	1,040.8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2	1,084.4		
				-3	1,084.6		
				-4	1,099.7		
		③	7,232.6	-1	1,064.1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2	1,117.4		
				-3	1,790.4		
				-4	1,086.7		
				-5	1,086.9		
④	3,902.9	-1	924.1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2	922.6				
		-3	924.2				
		-4	1,132.0				
기정	업무5	①	1,679.9	-1	876.8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2	803.1		
		②	2,601.2	-1	865.2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2	867.1		
				-3	868.9		
		③	3,607.3	-1	899.0	필지분할 불가,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허용 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가능	3단계
				-2	903.8		
				-3	901.4		
				-4	903.1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바.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주1	-	충무공동 167-1번지	736.1	736.1	-	-	-	
기정	주2	-	충무공동 209-1번지	1,821.4	1,821.4	-	-	-	
기정	주3	-	충무공동 198-11번지	1,006.6	1,006.6	-	-	-	
기정	주5	-	충무공동 38-1번지	2,236.0	2,236.0	-	-	-	
기정	주6	-	충무공동 116-4번지	793.0	793.0	-	-	-	
기정	주7	-	충무공동 123-1번지	667.0	667.0	-	-	-	
기정	주8	-	충무공동 138-11번지	1,782.5	1,782.5	-	-	-	
기정	주9	-	충무공동 83-5번지	2,806.9	2,806.9	-	-	-	
기정	주10	-	충무공동 85-4번지	1,169.6	1,169.6	-	-	-	
기정	주11	-	충무공동 95-1번지	672.6	672.6	-	-	-	
기정	주12	-	충무공동 287-3번지	1,593.8	1,593.8	-	-	-	
기정	주13	-	충무공동 289-6번지	3,039.4	3,039.4	-	-	-	
기정	주14	-	충무공동 314-11번지	591.1	591.1	-	-	-	
기정	주18	-	충무공동 269-1번지	728.5	728.5	-	-	-	
기정	주19	-	충무공동 167-27번지	1,345.5	1,345.5	-	-	-	
기정	주20	-	충무공동 152-5번지	660.2	660.2	-	-	-	
기정	주21	-	충무공동 48-19번지	670.5	670.5	-	-	-	
기정	주22	-	충무공동 240-4번지	626.0	626.0	-	-	-	
기정	주23	-	충무공동 29-5번지	1,250.2	-	1,250.2	-	-	
기정	주24	-	충무공동 25-7번지	900.1	-	900.1	-	-	
기정	주25	-	충무공동 63-20번지	868.1	-	868.1	-	-	
기정	주26	-	충무공동 108-6번지	746.0	-	746.0	-	-	
기정	주27	-	충무공동 319-1번지	1,218.2	-	-	1,218.2	-	
기정	주28	-	충무공동 323-1번지	614.2	-	-	614.2	-	
기정	주29	-	충무공동 337-1번지	659.2	-	-	659.2	-	
기정	주30	-	충무공동 282-5번지	1,365.4	-	-	1,365.4	-	
기정	주31	-	충무공동 184번지	13,115.5	-	-	-	13,115.5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2)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청1	-	2,253.0	충무공동 101-1번지	2,253.0		1단계
기정	청3	-	928.8	충무공동 78-2번지	928.8		4단계
기정	청4	-	868.6	충무공동 277-1번지	868.6	우체국	3단계
기정	청5	-	989.1	충무공동 277-2번지	989.1	파출소	3단계
기정	청6	-	2,859.7	충무공동 277-3번지	2,859.7	주민센터	1단계
기정	청7	-	120.0	충무공동 2-5번지 일원	120.0	치안센터	4단계

3) 교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유1	-	988.0	충무공동 190-4번지	988.0		1단계
기정	유2	-	2,233.9	충무공동 277-4번지	2,233.9		1단계
기정	유3	-	1,277.0	충무공동 112-1번지	1,277.0		1단계
기정	초1	-	11,719.9	충무공동 190-1번지	11,719.9		1단계
기정	초2	-	13,100.6	충무공동 342번지	13,100.6		3단계
기정	초3	-	12,057.0	충무공동 125번지	12,057.0		2단계
기정	중1	-	13,954.9	충무공동 273-1번지	13,954.9		3단계
기정	중2	-	13,749.6	충무공동 76-1번지	13,749.6		2단계
기정	고1	-	13,953.8	충무공동 2-363번지	13,953.8		3단계
기정	고2	-	13,608.0	충무공동 128번지	13,608.0		2단계

4) 운동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운1	-	206,214.9	충무공동 8번지	206,214.9	종합운동장	2단계

5)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문1	-	18,104.4	충무공동 277-7번지	18,104.4		3단계
기정	문2	-	1,658.5	충무공동 78-1번지	1,658.5		1단계
기정	문3	-	6,611.0	충무공동 225-1번지	6,611.0		3단계
기정	문4	-	7,875.0	충무공동 183번지	7,875.0		4단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6) 주유소(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주유1	-	2,239.3	충무공동 222-1번지	2,239.3		1단계
기정	주유2	-	988.7	충무공동 88번지	988.7		1단계
기정	주유3	-	1,509.8	충무공동 317-3번지	1,509.8		3단계

7) 종교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종1	-	2,049.4	충무공동 101-2번지	2,049.4		1단계
기정	종2	-	4,310.5	충무공동 277-5번지	4,310.5		1단계
기정	종3	-	2,216.1	충무공동 317-5번지	2,216.1		3단계

8)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복1	-	1,694.0	충무공동 112-2번지	1,694.0		1단계

9) 수도공급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배1	-	4,489.3	충무공동 349번지	4,489.3		1단계

10)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전1	-	254.2	충무공동 6번지	254.2	송전탑	2단계
기정	전4	-	2,879.5	충무공동 165-2번지	2,879.5	변전소	3단계

11)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통1	-	225.0	충무공동 101-3번지	225.0		1단계

12) 저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저1	-	2,600.0	충무공동 291-1번지	2,600.0	4호수변공원과 중복결정	3단계
기정	저2	-	22,644.0	충무공동 183번지	22,644.0	12호근린공원과 중복결정	3단계
기정	저3	-	23,364.0	충무공동 44번지	23,364.0	4호근린공원과 중복결정	2단계

13) 하수도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오1	-	430.2	충무공동 185번지	430.2	오수중계펌프장	1단계
기정	오2	-	1,843.7	충무공동 9번지	1,843.7	오수중계펌프장	2단계

14)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단계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자2	-	1,429.1	충무공동 165-3번지	1,429.1		3단계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1~ D-5, D-9~ D-24, E-3, E-4, E-8~ E-1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1필지당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획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개발시는 당초 지정된 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와 수용세대수는 <별표2>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의 합은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합병할 경우 합병된 용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별표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1 (점포주택형 택지)	R2 (협의양도자 택지, 일반형 택지)	R3 (블록형 택지)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단독형 집합주택 • 3층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60%이하	50%이하
용적률		180%이하	120%이하	100%이하
최고층수		4층	3층	3층
1필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	2가구 이하	<별표2 참조>
해당블록		D-3(②, ③), D-11(②), D-12(⑧), D-13(①, ②), D-15(④~⑨, ⑩-5)	D-1, D-2, D-3(①, ④~⑨), D-4, D-5, D-9, D-10, D-11(①, ③, ④), D-12(①~③, ⑥, ⑦, ⑨), D-13(③, ④), D-14, D-15(①~③, ⑩-1~④), D-16~D-24	E-3, E-4, E-8~E-17

< 별표2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번호	대지규모 ^{주)}	구분	대지면적(m ²)	허용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면적(m ²)	비고
	계		144,565.7	476	1,333	-	
E-3	-	-	31,791.0	107	300	298	4단계
E-4			48,708.3	164	459	298	2단계
E-8			2,365.1	7	20	321	3단계
E-9			3,845.3	12	34	321	3단계
E-10			7,538.1	24	67	321	3단계
E-11			9,223.7	29	81	321	3단계
E-12			5,409.3	17	47	321	3단계
E-13			6,890.0	21	59	321	3단계
E-14			7,178.1	22	61	321	3단계
E-15			8,051.2	27	76	294	4단계
E-16			8,431.7	29	81	294	4단계
E-17			5,133.9	17	48	294	4단계

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15.1.7., 국토교통부)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참조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1~ 근생4	근생1~ 근생4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층)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1, 2층의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13	A-1 ~ A-1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에 따라야 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바람길과 소음저감방안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A-2, A-3, A-9, A-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2-1호선(동진로), 대로 3-20호선 및 지방도 1009호선변으로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점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점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점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7, A-8, A-11, A-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으로 최고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최고층 배치구간에서는 당해 구간에 수용되는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을 지정된 층수의 아파트에 수용하여야 한다. 단, 최고층수는 지정된 층수의 3개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에 배치된 가장 높은 층수보다 최소 3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한다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경구간 -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A-2, A-3, A-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지변으로 저층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저층배치구간에는 지정된 층수이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A-7~ A-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고속도로방향으로 저층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저층배치구간에는 지정된 층수이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A-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인접한 구간에는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 A-13	A-1 ~ A-13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 1동의 길이는 기준층에 대하여 호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로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이하 : 6호 이하 - 85㎡초과 : 4호 이하 • 동일 주거동내에서 층수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2호 이내의 코아를 공유하는 UNIT 단위로 3개층 이상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 주거동의 입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여야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11~16조를 준수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별표4>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 이내로 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별표 3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구 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A-1 ~ A-13

< 별표 4 > 공동주택의 규모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규모 (㎡)	최고층수 (층)	평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A-1	60㎡초과-85㎡이하	45,549.8	742	2,078	114	25	-	30	181	1단계
A-2	60㎡초과-85㎡이하	26,500.6	422	1,182	114	25	-	30	181	3단계
A-3	60㎡이하	37,029.6	1,256	2,358	54	20	-	30	183	4단계(행복)
A-4	60㎡초과-85㎡이하	64,597.8	1,037	2,904	114	20	-	30	182	1단계
A-5	60㎡초과-85㎡이하	38,108.5	600	1,680	114	20	-	30	179	3단계(임대)
A-6	85㎡초과	50,883.9	728	2,038	128	20	-	30	183	3단계
A-7	60㎡초과-85㎡이하	23,284.3	399	1,117	114	25	-	30	195	3단계
	85㎡초과	23,284.3	355	994	128	25	-	30	195	
A-8	60㎡이하	37,701.2	803	2,248	79	25	-	30	195	3단계(공분)
A-9	60㎡이하	27,964.3	630	1,764	79	25	-	30	195	3단계(공분)
A-10	60㎡초과-85㎡이하	24,022.6	404	1,131	114	20	-	30	191	3단계
A-11	60㎡이하	38,827.0	882	2,470	79	25	20	30	180	1단계(임대)
A-12	60㎡초과-85㎡이하	38,290.5	624	1,747	111	25	20	30	181	2단계
	85㎡초과	38,290.5	529	1,481	131	25	20	30	181	
A-13	60㎡초과-85㎡이하	89,576.4	1,436	4,021	111	25	20	30	178	1단계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4	C-1~ C-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는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90%미만으로 한다. •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한다. • 주거외 용도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지하는 2층이내 허용)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층)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6>에 따라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1, 2층의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 지침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타워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500제곱미터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다. • 주거동의 입면은 지상층부, 기준층부, 최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 간에는 색채, 재질, 외관의 디자인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타워형인 경우 제외),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8분의 1이내에서 허용. 다만, 옥상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3장 주상복합용지' 제5조를 준수한다.
		색채	•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별표 5 >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AC		
	허용용도	주거부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등 제외)	
		상업부분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과 관람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과 관람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청소년보호법 제23조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별표 6 >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필지 번호	주택 규모 (㎡)	필지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3층이하 부분	4층이상 부분	주거	전체	
C-1	60㎡초과	7,965.0	233	653	120	-	60	50	350	450	2단계
C-2	60㎡초과	22,461.6	560	1,568	140	-	60	50	350	450	3단계
C-3	60㎡초과	11,593.9	339	949	120	-	60	50	350	450	3단계
C-4	60㎡초과	15,155.1	444	1,243	120	-	60	50	350	450	3단계
합 계		57,175.6	1,576	4,413	-	-	-	-	-	-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1~상6, 업무1~업무5	상1~ 상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는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3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토록 하며, 권장용도면적 산정시 건축연면적에서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 • 상4의 경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한다. 이 경우 1층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을 권장하며, 특히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층부의 높이를 4.5미터로 하여야 한다. 	
	업무1~ 업무5	용도	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상1~상6, 업무1~업무5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층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을 권장한다.
	상1~상6, 업무1~업무5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1층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필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지의 1층 벽면지정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면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1,2층의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 공공공지, 수변공원, 연결녹지 변을 따라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폭 4m의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아케이드를 위한 기둥은 벽면지정선을 넘어서 설치할 수 있으며 아케이드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는 보행자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별표 7 > 상업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C1(상4)	C2(상5)	C3(상2, 상3)	C4(상6)	C5(상1)
단독주택	X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공연장·전시장에 한함	공연장·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	○	○	○	○	○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판매시설	●	○	●	●	○
운수시설	X	X	X	X	X
의료시설	○	○	○	○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 분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C1(상4)	C2(상5)	C3(상2, 상3)	C4(상6)	C5(상1)
교육연구시설	○	○ 학교 제외	X	●	●
노유자시설	X	○	X	○	○
수련시설	X	○	X	○	○
운동시설	○	○	○	○	○
	육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육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육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	○	●	●	○
숙박시설	X	○	●	X	X
		일반숙박시설일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50m 이상 떨어진 대지에만 가능	일반숙박시설일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50m 이상 떨어진 대지에만 가능		
위락시설	○	○	●	X	X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50m 이상 떨어진 대지에만 가능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50m 이상 떨어진 대지에만 가능, 단, 단란주점,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는 불허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50m 이상 떨어진 대지에만 가능		
공장	X	X	X	X	X
창고시설	X	X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X	○	○	X
	주유소에 한함		주유소에 한함	주유소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	○	○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X	X
방송통신시설	○	○	○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발전시설	X	X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X	X
관광휴게시설	X	○	X	X	X

1) C3(상2, 상3)중 상3만 상점에 한함.
 주1) ○ : 허용용도(● : 권장), X : 불허용도
 주2) 주상복합은 불허용도임.
 주3)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별표 8 > 상업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C1	C2	C3	C4	C5
건폐율	80%이하	80%이하	8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600%이하	600%이하	600%이하	400%이하	300%이하
최고층수	-	-	-	7층이하	5층이하
최저층수	5층이상	-	5층이상	3층이상	-
해당블록	상4	상5	상2, 상3	상6	상1

바.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이전1, 이전2, 이전4~ 이전6 이전9~ 이전11, 이전13~ 이전15 클1~클5, 클7~클9	이전1, 이전2, 이전4~ 이전6 이전9~ 이전11, 이전13~ 이전15, 클1~클5, 클7~클9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혁신클러스터용지의 건축물은 정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전면도로와 수평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변경	이전1, 이전2, 이전4~ 이전6 이전9~ 이전11, 이전13~ 이전15 이전16, 이전17 클1~클5, 클7~클9	이전1, 이전2, 이전4~ 이전6 이전9~ 이전11, 이전13~ 이전15 이전16, 이전17 클1~클5, 클7~클9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혁신클러스터용지의 건축물은 정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전면도로와 수평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별표9> 혁신클러스터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전공공기관용지	G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단, '이전13', '이전14', '이전15'는 사택, 보육시설 및 부대시설, 근로복지시설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단 '이전16', '이전17'은 이전 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중 자연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G2 (클1,2,3,7,8,9) G3 (클4) G4 (클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의 단란주점, 리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거목의 고시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별표10> 혁신클러스터용지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이전공공기관용지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건폐율	60%이하	50%이하	2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200%이하	80%이하	300%이하	350%이하
최고층수	-	-	-	-	-
해당블록	이전1, 이전2, 이전4~이전6, 이전9~이전11	이전13~이전15	이전16, 이전17	클1~클3, 클5, 클7~클9	클4

사.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유1~3	유1~3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초1~3	초1~3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중1~2	중1~2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고1~2	고1~2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1~종3	종1~종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중의 종교집회장 및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목회자 숙소 등) 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종탑의 높이는 지면에서 30m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 종탑에는 네온, 백열등의 장식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주1~주3, 주5~주14, 주18~주31	주1~주3, 주5~주14, 주18~주3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90% 이하	
	주1~주3, 주5~주14, 주18~주31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3층 이하	
	주5, 주9, 주10, 주12, 주13, 주23, 주30	용적률	• 6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청1, 청3~청7	청1	용도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부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노인복지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감을 주기위해 1층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거나 투시형 서터 설치를 권장한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청1, 청3~청7	청3	용도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 일반업무시설 	
			부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욕외에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노인복지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 개방감을 주기위해 1층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거나 투시형 서터 설치를 권장한다.				
청1~청7	청4~청6	용도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중 개발계획에서 지정한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중 개발계획에서 지정한 용도 	
			부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욕외에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노인복지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 개방감을 주기위해 1층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거나 투시형 서터 설치를 권장한다.			
	용도	• 기존 용도(치안센터)에 한함			
	청7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전1, 전4	전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 설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전4	용도	• 변전시설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갈전전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4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운1	운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 운동장 및 부속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색채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1~ 문4	문1	용도	주용도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 옥외에 철담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철담의 높이는 지면에서 40m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51조에 의한 높이제한이 40m 미만일 경우 건축법의 높이제한을 따른다.	
	문2	용도	주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항 4호(공공·문화체육시설)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 개방감을 주기위해 1층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거나 투시형 서터 설치를 권장한다.		
	문3	용도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공연장·전시장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옥외에 철담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 개방감을 주기위해 1층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거나 투시형 서터 설치를 권장한다.	
	문4	용도	주용도	•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부수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옥외에 철담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 개방감을 주기위해 1층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거나 투시형 서터 설치를 권장한다.			
주유1~ 주유3	주유1~ 주유3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V의 제1항에 의한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간이정비시설,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판매시설 및 휴게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색채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통1	통1	용도	• 통신용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색채	-
복1	복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
오1, 오2	오1, 오2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중 우수중계펌프장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색채	-
배1	배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 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본시설은 지하화하며, 지상에는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태 및 색채	-
자2	자2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수리점에 한함) 및 자동차영업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색채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1~ D-5, D-9~ D-24, E-3, E-4, E-8~ E-17	D-1~ D-5, D-9~ D-24, E-3, E-4, E-8~ E-17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필지당 2대 이상'과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상기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각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¹⁾'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E-3, E-4, E-8~ E-17	E-3, E-4, E-8~ E-17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내 차량동선은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시 : 가지형태의 차량동선 등)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도 개별주차장보다는 공동주차장 위주로 조성하며, 이때 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또는 공동주차장 주변 등)에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1~ 근생4	근생1~ 근생4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근생4	근생1~ 근생4	부설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체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¹⁾’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p>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p>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3	A-1~ A-13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 11>를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진주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결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결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 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3	A-1~ A-13	단지내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¹⁾’을 적극 권장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포장으로 본다.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3	A-1~ A-13	친 환 경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생태면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티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제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해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C-4	C-1~ C-4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아케이드 조성을 위한 구조물과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공공보행통로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지정선으로 이루어진 전면공지에는 건축물 1층 외벽면으로부터 노천카페 등을 위한 폭 2m 이내의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
		단지내 차량출입 및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관련법령', '진주시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도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1~ 상6, 업무1~ 업무5	상1~ 상6, 업무1~ 업무5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는 4미터 폭 이상으로 1층에 설치하되 공공보행통로가 필지경계선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필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상업업무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이전1, 이전2, 이전4~ 이전6 이전9~ 이전11, 이전13~ 이전15, 이전16, 이전17, 클1~클5, 클7~클9	이전1, 이전2, 이전4~ 이전6 이전9~ 이전11, 이전13~ 이전15, 이전16, 이전17, 클1~클5, 클7~클9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혁신클러스터용지내에는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유1~3, 초1~3, 중1~2, 고1~2, 중1~3, 주1~3, 주5~14, 주18~31, 청1,3~7, 전1, 전4, 운1, 문1~4, 주유1~3, 통1, 복1, 오1~2, 배1 자2	유1~3, 초1~3, 중1~2, 고1~2, 중1~3, 주1~3, 주5~14, 주18~31, 청1,3~7, 전1, 전4, 운1, 문1~4, 주유1~3, 통1, 복1, 오1~2, 배1 자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 문1에 옥외에 철담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북측도로에 면하여 폭 5m의 공공조경을 추가 지정한다.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1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변경없음)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 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분	조 성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며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 진입부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의 최소규모는 진주시 건축조례를 따르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5m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은 건축법 제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 정하는 조경시설 면적에 포함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¹⁾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차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	<p>-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7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조경의 식재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auto;"> <thead> <tr> <th style="width: 50%;">수목구분</th> <th style="width: 25%;">식재밀도(본/m²)</th> <th style="width: 25%;">상록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0.3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록수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0.5본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수목구분	식재밀도(본/m ²)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수목구분	식재밀도(본/m ²)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공공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²⁾’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³⁾’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 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인접한 건물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상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단,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의 개방시간에만 개방되어도 무방하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p>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p> <p>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p> <p>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p>									

● **진주시 공고 제2023-723호**

진주도시계획시설(소로문산2-11호선)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진주시 문산읍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문산2-11호선)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진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47-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소로 문산 2-11호선(서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정규모					금회시행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도로	소로	문산2	11	8	416	8	156	경고 제417호 (2012.10.4.)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7.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9.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서 서면제출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로과(☎055-749-8791) 및 도시계획과(☎055-749-886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7필지		6,013	1,047					
1	문산읍 소문리	147-20	도	2179	116	진주시				
2	문산읍 소문리	153-15	대	544	43	한○일	진양군 문산읍 소문리			
3	문산읍 소문리	153-79	대	217	66	임○우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27번길			
4	문산읍 소문리	153-16	대	364	110	강○욱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5	문산읍 소문리	153-80	대	168	113	최○문	진양군 문산읍 소문리			
6	문산읍 소문리	153-5	대	20	7			김○상○		토지대장 상 소유자
7	문산읍 소문리	2375-8	도	277	18	국 (농림수산부)				
8	문산읍 소문리	148-47	대	221	120	김○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진주○마○급고	경상남도 진주시 돛골로	근저당권
9	문산읍 소문리	148-32	대	393	101	조○호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0	문산읍 소문리	148-33	대	225	128	이○원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씨○이○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근저당권
								민○수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근저당권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문산읍 소문리	148-31	대	499	16	○한○수교○로 회○양○회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엘○마○금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근저당권
12	문산읍 소문리	148-67	대	62	30	김○식 (12/356)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김○순 (344/356)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산○마○금고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근저당권
13	문산읍 소문리	148-22	도	79	65	진주시				
14	문산읍 소문리	148-50	대	407	23	노○수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15	문산읍 소문리	148-57	대	203	45	우○준 (1/2)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우○준 (1/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43번길	○산○업○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근저당권, 지상권
16	문산읍 소문리	148-92	대	53	45	유○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7	문산읍 소문리	148-12	대	102	1	김○식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43번길	○민○마○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축석로	근저당권

● **진주시 공고 제2023-724호**

진주도시계획시설(중로1-22호선)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진주시 장재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진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 : 진주시 장재동 161-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정규모					금회시행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도로	중로	1	22	11~20	6,992	20	1,000	

※ 중로1-22호선 : 지역여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비탈면 포함)

※ 대로3-11호선 : 지역여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중로1-22호선 중복부 삭제)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불입(변경:적서)

7.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9.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서 서면제출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로과(☎055-749-8228) 및 도시계획과(☎055-749-8867)로 문의 바랍니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97필지		41,034	41,117					
1	장제동	161-14	임	260	254	진주시				
2	장제동	산44-1	임	82,595	273	○참○공○중	진양군 명석면 관지리			
3	장제동	378-8	도	792	455	진주시				
4	장제동	387-19	도	290	43	진주시				
5	장제동	161-13	도	3,602	2,843	진주시				
6	장제동	340-1	구	1,132	1,055	국 (국토교통부)				
7	장제동	363-4	도	245	123	진주시				
8	장제동	363-2	도	179	130	조○동	진주시 장제동			
9	장제동	363-1	도	496	446	미등기		이○철		토지대장상 소유자
10	장제동	산44-4	도	531	27	진주시				
11	장제동	387-2	답	2,341	14	김○곤	경상남도 진주시 조전동	○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근저당권
12	장제동	387-1	답	2,298	30	정○권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			
13	장제동	339-13	도	8,540	7,525	진주시				
14	장제동	339-7	답	829	3	안○호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15	장제동	339-6	답	1,599	15	최○임	진주시 철암동			
16	장제동	320-5	도	53	18	강○환	진주시 하촌동			
17	장제동	320-4	도	228	194	국 (국토교통부)				
18	장제동	340	구	2,365	1,365	국 (국토교통부)				
19	장제동	319-2	도	228	228	미등기		서○암		토지대장상 소유자
								서○조		
								서○덕		
								서○수		
20	장제동	산58-1	도	61	5	미등기		박○인		토지대장상 소유자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장제동	319-4	도	76	76	미등기		서○암		토지대장상 소유자	
								서○조			
								서○덕			
								서○수			
22	장제동	339-28	도	6	6	이○순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남로				
23	장제동	314-1	도	221	221		김○진 (1/4)	진주시 장대동			
							김○근 (1/4)	진주시 장대동			
							김○균 (1/4)	진주시 장대동			
							김○석 (1/4)	진주시 장대동			
24	장제동	339-12	답	1,433	24	이○순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남로				
25	장제동	309-7	도	3,587	2,651	진주시					
26	장제동	산57-1	도	206	62	진주시					
27	장제동	313-4	도	132	132	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28	장제동	313-2	도	364	364	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29	장제동	313-5	도	118	118	진주시		○도○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30	장제동	311-2	도	10	10	강○철	진주시 장제동				
31	장제동	310-4	도	20	20		강○성 (1/2)	진주시 하촌동			
							강○중 (1/2)	진주시 하촌동			
32	장제동	309	도	40	40	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33	장제동	309-2	도	235	235	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34	장제동	310-2	도	99	99	미등기		김○진	대안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김○근	대안동		
								김○균	대안동		
								김○석	대안동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	장재동	310-3	도	145	145	강○성 (1/2)	진주시 하촌동			
						강○중 (1/2)	진주시 하촌동			
36	하촌동	13-3	답	1,660	41	송○인	경상남도 진주시 진산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근저당권
37	하촌동	13-4	도	302	302	진주시				
38	장재동	309-9	도	1,598	595	국 (국토교통부)				
39	장재동	309-6	도	132	132	진주시				
40	장재동	309-4	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41	장재동	309-1	전	106	106	진주시				
42	하촌동	13-2	답	2,418	61	강○태	진주시 하대동	○부○업 협동조합	진주시 상대동	근저당권
43	하촌동	산15-4	도	1,980	703	진주시				
44	하촌동	17-3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45	하촌동	17-4	도	119	119	진주시				
46	하촌동	17-1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47	하촌동	17-2	전	1,342	1,289	진주시				
48	하촌동	산15-3	도	90	90	강○규 (1/2)	진주시 상봉서동			
						강○규 (1/2)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9	하촌동	14	구	2,512	2,380	국 (국토교통부)				
50	하촌동	882-2	도	3	3	국 (국토교통부)				
51	하촌동	883	구	119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52	하촌동	15-1	전	840	840	강○규	진주시 옥봉동			
53	하촌동	15-3	도	489	489	진주시				
54	하촌동	15-2	도	60	60	미등기		강○옥	수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5	하촌동	12	답	1,089	43	김○은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			
56	하촌동	12-1	답	45	45	진주시				
57	하촌동	11-4	답	78	78	진주시				
58	하촌동	11-3	답	81	81	진주시				
59	하촌동	11-1	답	2,207	7	박○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60	하촌동	산15-1	구	1,223	384	국 (국토교통부)				
61	하촌동	896-3	구	63	63	국 (국토교통부)				
62	하촌동	37-2	도	136	50	강○상 (6/9)	진주시 수정동			
						강○순 (1/9)	진주시 신안동			
						강○자 (1/9)	진주시 남성동			
						강○달 (1/9)	부산시 서구 괴정동			
63	하촌동	35-4	도	484	196	진주시				
64	하촌동	37-4	답	2,414	2,373	진주시				
65	하촌동	38-4	전	1,662	1,662	진주시				
66	하촌동	36-9	답	81	68	강○정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근저당권
67	하촌동	38-1	전	179	179	진주시				
68	하촌동	896-2	구	869	310	국 (국토교통부)				
69	하촌동	41-2	전	265	113	강○정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근저당권
70	하촌동	9-1	답	2,006	65	빈○열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김○수 외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	가압류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근저당권
71	하촌동	9-3	답	212	212	진주시				
72	하촌동	93-3	답	301	301	진주시				
73	하촌동	40-1	답	795	735	강○진	진주시 하촌동	○부○업 협동조합	진주시 상대동	가압류
74	하촌동	98-1	답	721	721	진주시				
75	하촌동	97-1	답	1,087	1,087	진주시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6	하촌동	41-1	도	38	16	진주시				
77	하촌동	42-1	도	33	33	미등기		강○옥	봉곡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78	하촌동	40-3	도	12	12	진주시				
79	하촌동	42-2	도	284	80	미등기		강○옥	수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80	하촌동	888	도	426	273	국 (국토교통부)				
81	하촌동	54-1	도	121	10	강○조	부산 부산진구 부암2동			
82	하촌동	55-4	도	131	106	진주시		○도○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83	하촌동	55-1	도	182	182	구○숙	진주시 하촌동			
84	하촌동	87-1	답	50	50	진주시				
85	하촌동	87-2	도	175	175	진주시				
86	하촌동	89-3	도	17	17	강○중	진주시 하촌동			
87	하촌동	88-2	도	93	26	김○이	진주시 옥봉동			
88	하촌동	87-3	도	281	281	강○진	진주시 하촌동	○부○업 협동조합	진주시 상대동	가압류
89	하촌동	88-1	답	1,451	26	정○일 (1/4)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근저당권, 지상권
						박○숙 (1/4)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정○일 (1/4)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박○숙 (1/4)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90	하촌동	88-3	답	701	701	진주시				
91	하촌동	55-2	도	3,928	1,636	진주시				
92	하촌동	85	답	1,541	7	정○일 (1/2)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근저당권, 지상권
						박○숙 (1/2)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93	하촌동	85-1	답	929	929	진주시				
94	하촌동	84-4	답	481	481	하○주 (895/1227)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이○자 (332/12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5	하촌동	82-2	도	298	110	미등기		구○조		토지대장상 소유자
96	장재동	387-9	답	297	26	진주시				
97	하촌동	16	도	83	83	미등기		강○옥	수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 **사천시 고시 제2023-41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남부 근린공원6 (망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69-12호(1969.01.10.)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161호(2022.08.11.)호로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망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붙임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 게재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시과 및 녹지공원과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3) 및 녹지공원과(☎055-831-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붙임: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망산공원	근린공원	사천시 선구동 252번지 일원	54,650	-	54,650	'69.01.10 (건설부 고시 제1969-12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망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 계획변경 • 세부시설 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내 세부시설 면적 수정 • 공원조성계획 변경

2. 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변경

시설의 구분	시설면적 (㎡)			구성비 (%)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54,650	-	54,650	100.0	100.0	286	증)8.76	294.76	286	증)2.02	288.02	
시설면적	10,621	-	10,621	19.4	19.4	286	증)8.76	294.76	286	증)2.02	288.02	
도로및광장	5,295	-	5,295	9.7	9.7	-	-	-	-	-	-	
조경시설	1,111	-	1,111	2.0	2.0	-	-	-	-	-	-	
휴양시설	542	-	542	1.0	1.0	-	-	-	-	-	-	
교양시설	1,530	-	1,530	2.8	2.8	-	-	-	-	-	-	
운동시설	1,257	-	1,257	2.3	2.3	-	-	-	-	-	-	
편익시설	789	-	789	1.4	1.4	189	증)8.76	197.76	189	증)2.02	191.02	
관리시설	97	-	97	0.2	0.2	97	-	97	97	-	97	
녹지및기타	44,029	-	44,029	80.6	80.6	-	-	-	-	-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조사: 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 원 면 적			54,650	-	54,650	286	증)8.76	294.76	286	증)2.02	288.02	
시 설 면 적			10,621	-	10,621	286	증)8.76	294.76	286	증)2.02	288.02	시설율: 19.4%
도로및광장			5,295	-	5,295	-	-	-	-	-	-	
기정	-	도로	4,702	-	4,702	-	-	-	-	-	-	
기정	가-1	진입광장-1	195	-	195	-	-	-	-	-	-	
기정	가-2	분수광장	398	-	398	-	-	-	-	-	-	
조경시설			1,111	-	1,111	-	-	-	-	-	-	
기정	나-1	화목원	1,111	-	1,111	-	-	-	-	-	-	
휴양시설			542	-	542	-	-	-	-	-	-	
기정	다-1	휴게광장-1	47	-	47	-	-	-	-	-	-	
기정	다-2	휴게광장-2	182	-	182	-	-	-	-	-	-	
기정	다-3	휴게광장-3	19	-	19	-	-	-	-	-	-	
기정	다-4	전망대	175	-	175	-	-	-	-	-	-	
기정	다-5	어린이놀이터	119	-	119	-	-	-	-	-	-	
교양시설			1,530	-	1,530							
변경	라-1	어울림마당	870	-	870							
신설	라-2	유아숲체험장	660	-	660							
운동시설			1,257	-	1,257	-	-	-	-	-	-	
기정	마-1	주민체육공간	422	-	422	-	-	-	-	-	-	
기정	마-2	건강마당	835	-	835	-	-	-	-	-	-	
편익시설			789	-	789							
기정	바-1	주차장	509	-	509	-	-	-	-	-	-	
신설	바-2	휴게음식점	280	-	280	189	증)8.76	197.76	189	증)2.02	191.02	1층
관리시설			97	-	97	97	-	97	97	-	97	
기정	사-1	관리사무소	97	-	97	97	-	97	97	-	97	1층
녹지 및 기타			44,029	-	44,029	-	-	-	-	-	-	
변경	-	녹지	44,029	-	44,029	-	-	-	-	-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3. 세부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3~1.2	1,772	4,555				
기정	소로	2	1	8	20	160	진입로	동측경계	세로13	
기정	소로	3	1	3	326	978	진입로	진입광장-1	분수광장	
기정	소로	3	2	3	131	393	진입로	진입광장-1	세로11	
기정	소로	3	3	3	176	528	진입로	주차장	건강마당	
기정	소로	3	4	3	30	90	진입로	분수광장	어울림마당	
기정	소로	3	5	3	94	282	산책로	소로3-1	휴게광장-2	
기정	소로	3	6	3	142	426	산책로	소로3-5	소로3-1	
기정	소로	3	7	3	10	30	연결로	소로3-5	전망대	
기정	세로	-	1	1.8	81	146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3	
기정	세로	-	2	2.5	38	95	산책로	소로3-2	소로3-5	
기정	세로	-	3	2.5	14	35	연결로	소로3-2	화목원	
기정	세로	-	4	2.5	12	30	연결로	세로5	화목원	
기정	세로	-	5	2.5	92	230	산책로	소로 3-3	소로3-2	
기정	세로	-	6	1.5	36	54	연결로	북측경계	소로3-3	
기정	세로	-	7	1.8	45	81	연결로	소로3-3	세로11	
기정	세로	-	8	1.2	60	72	산책로	세로10	휴게광장-1	
기정	세로	-	9	1.5	8	12	연결로	세로8	소로3-6	
기정	세로	-	10	2	131	262	산책로	소로3-1	휴게광장-2	
기정	세로	-	11	2	247	494	산책로	어울림마당	소로3-5	
기정	세로	-	12	2	67	134	연결로	어울림마당	건강마당	
기정	세로	-	13		59	170	연결로	소로2-1	남측경계	

● 사천시 고시 제2023-42호

사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⑥:망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161호(2022. 8. 11.)로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⑥:망산공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예비사업 보두레 신축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사 천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26-440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⑥:망산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도시재생 예비사업 보두레 신축공사
- 사업개요
 - 가. 공작물 주차장 축조
 - 건축면적: 197.76㎡
 - 연 면 적: 191.02㎡
 - 층수 및 구조: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 팽스라브(콘크리트)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3. 3.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자	
				공부상	편입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사천시 선구동	26-440	전	842	842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도시재생과장)		

2.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고시 제2023-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2-17호(2022.01.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1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산 7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1호선)사업

나. 명 칭 : 남부 시도18호선(탑포마을) 진입도로 사면정비 및 확포장공사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3. 사업개요

구분	등급 및 규모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면적(㎡)	
도로	소로	1	11	2,818	8~11	273	8	4,233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5. 사업기간

가.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 **붙임**

[남부 시도18호선(탑포마을)진입도로 사면정비 및 확포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공 유 지 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구분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동부면 울포리	산73-5	산73-5	도	8,189	248	-						
2	동부면 울포리	산73-18	산73-18	임	12	12	-						
3	동부면 울포리	산73-14	산73-14	임	199	199	-						
4	동부면 울포리	산73-19	산73-19	임	202	202	-						
5	동부면 울포리	산74-2	산74-2	도	686	240	-						
6	동부면 울포리	산74-4	산74-4	임	527	520	-						
7	동부면 울포리	산74-5	산74-5	임	332	2	-						
8	남부면 탑포리	산70-1	산70-1	도	4,877	119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구분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	남부면 탑포리	산70-3	산70-3	도	291	2	-						
10	남부면 탑포리	산70-4	산70-4	임	95	10	-						
11	남부면 탑포리	산70-5	산70-5	임	340	340	-						
12	남부면 탑포리	483-3	483-3	과	111	111	-						
13	남부면 탑포리	산3-11	산3-11	임	500	500	-						
14	남부면 탑포리	산3-13	산3-13	임	3	3	-	이종덕	거제시 양정동 1084-7 고려5차아파트 602동 1201호				
15	남부면 탑포리	산3-14	산3-14	도	285	285	-						
16	남부면 탑포리	482-7	482-7	도	226	226	-						
17	남부면 탑포리	482-4	482-4	도	71	71	-	유효열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29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거제수산업 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가압류	가압류
18	남부면 탑포리	482-8	482-8	전	329	329	-	이종덕	거제시 양정동 1084-7 고려5차아파트 602동 1201호				
19	남부면 탑포리	480-5	480-5	도	15	15	-						
20	남부면 탑포리	산3-15	산3-15	도	215	215	-						
21	남부면 탑포리	산3-16	산3-16	임	46	46	-						
22	남부면 탑포리	481-1	481-1	전	16	16	-	조정환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98				
23	남부면 탑포리	478-6	478-6	대	1	1	2/3	거제시					
							1/3	강대환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95, 310호(반여동, 송보자유아파트)				
24	남부면 탑포리	614	614	도	1,702	69	-						
25	남부면 탑포리	478-7	478-7	대	125	125	-						
26	남부면 탑포리	478-2	478-2	도	17	17	-	유득용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478				
27	남부면 탑포리	478-5	478-5	도	42	42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구분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8	남부면 탑포리	478-4	478-4	대	58	58	-						
29	남부면 탑포리	477-11	477-11	도	67	67	-						
30	남부면 탑포리	477-10	477-10	답	57	57	-						
31	남부면 탑포리	477-12	477-12	도	11	11	-						
32	남부면 탑포리	477-5	477-5	대	78	38	-						
33	남부면 탑포리	490-3	490-3	도	577	23	-						
34	남부면 탑포리	490-4	490-4	도	1,330	14	-						
합 계		34필지			21,632	4,233							

● **거제시 고시 제2023-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2-170호(2022.06.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6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거 제 시 장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258-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개설공사

3. 사업개요

구분	등급 및 규모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원 (m)	연장 (m)	폭원 (m)	면적 (㎡)	
도로	소로	2	26	708	8	110.8	8	934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5. 사업기간 : 2023. 03. 01. ~ 2024. 12. 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 **붙임**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구분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현동	258-7	258-7	도	267	196	단독소유	거제시					
2	고현동	258-14	258-14	대	6	6	단독소유	김찬호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51, 103동 701호(인창동,건영아파트)				
3	고현동	238-14	238-14	전	165	165	단독소유	우영자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43				
4	고현동	936-10	936-10	전	56	37	단독소유	옥주련	거제시 고현동 217번지				
5	고현동	269-2	269-2	전	114	101	단독소유	우영자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43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구분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	고현동	242-2	242-2	대	194	122	단독소유	이부자	제주시 아라1동 365-3번지				
7	고현동	242-4	242-4	도	122	16	단독소유	우영자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43				
8	고현동	242-21	242-21	전	159	123	단독소유	박무자	거제시 고현동 242-8번지				
9	고현동	267	267	도	6,269	168	단독소유	거제시					
합계		9필지			7,352	934							

● **거제시 고시 제2023-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2-170호(2022.06.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1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81-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31호선)개설공사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3. 사업개요

구분	등급 및 규모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원 (m)	연장 (m)	폭원 (m)	면적 (㎡)	
도로	소로	2	31	444	8	70.1	7.2~7.7	518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5. 사업기간 : 2023. 03. 01. ~ 2024. 12. 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붙임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31호선)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구분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현동	81-65	81-65	답	594	1	-	거제시					
2	고현동	82-51	82-51	답	362	41	-	거제시					
3	고현동	81-69	81-69	답	179	179	-	고방석	거제시 고현동 406-11				
4	고현동	82-57	82-57	답	133	133	-	강동진	거제시 고현로 10길 29, 2동 503호 (고현동, 일성계룡빌라)	신현농업 협동조합	거제시고현로11길 23(고현동)	근저당	
							-			신현농업 협동조합	거제시고현로11길 23(고현동)	지상권	
5	고현동	82-56	82-56	답	140	140	-	최길룡	거제시 고현로10길 29 2동 103호 (고현동, 일성계룡빌라)	장승포신용 협동조합	거제시 능포로128 (능포동)	근저당	
							-			장승포신용 협동조합	거제시 능포로128 (능포동)	지상권	
6	고현동	81-58	81-58	답	810	24	-	거제시					
합계	6필지				2,218	518							

● 거제시 공고 제2023-4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공고

거제시 고시 제2022-17(2022.01.27.)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36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거제도시계획도로(소로3-10호선)개설공사

3. 사업규모

구분	등급 및 규모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면적(㎡)	
도로	소로	3	10	118	6	45	6	232.4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5. 사업기간

-당초 : 2022.03.17. ~ 2023.06.01.

-변경 : 2022.03.17. ~ 2023.08.30.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6. 열람기간 : 2023.03.16. ~ 2023.03.31..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055-639-4417)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1 참조

● **붙임 1**

【소로3-10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권리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상	368-1	대	69	56		거제시						
2	서상	368-2	도	363.3	3.9		거제시						
3	서상	318-1	도	656.5	144.5		거제시						
4-1	서상	371-1	대	28	28		이인택	서울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8동 1401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압류		
4-2									서울신용 보증재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가압류	
4-3									국민연금 관리공단 (강남지사)			압류	
4-4									마산세무서			압류	
4-5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압류	
4-6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압류	
4-8									마포세무서			압류	
합계		4필지		1,116.8	232.4								

● 양산시 고시 제2023-84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남평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797-9번지 일원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남평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양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79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방수설비)
- 명 칭 : 남평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3. 사업규모 : A=926㎡(배수펌프장)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2020. 04. 23. ~ 2022. 12. 31.
- 변경 : 2020. 04. 23. ~ 2023. 06. 30.

6. 변경사유 : 현장 여건 반영 및 현장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증산리	797-8	도	2,962	72	양산시				
2	증산리	797-9	답	533	533	양산시				
3	증산리	797-27	구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4	증산리	797-29	도	95	1	국(농림축산식품부)				
5	증산리	797-31	도	254	254	양산시				
6	증산리	797-32	구	12	12	양산시				
합계				3,910	926					

● **창녕군 고시 제2023-32호**

창녕군계획시설(도로:소로2-3호)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창녕군 고시 제2021-93호(2021.6.24.)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녕군계획시설(도로:소로2-3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창녕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창녕군계획시설(도로:소로2-3호)
- 명 칭: 대합도시계획도로 소2-3호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L=250m, B=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창녕군수(도시건축과)
- 주 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붙임 참조

7. 관계도면: 실음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도시건축과(☎530-17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조서

사업명: 대합도시계획도로 소2-3호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6,088	1,392					
1	대합면 십이리	360-1	도	350	2	창녕군				
2	대합면 십이리	365-8	도	68	68	한국농어O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000			
3	대합면 십이리	365-3	도	780	21	창녕군				
4	대합면 십이리	365-6	유	49	49	한국농어O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000			
5	대합면 십이리	365-9	대	1	1	김O백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길 00			
6	대합면 십이리	599-11	천	1,184	445	농림축산 식품부				
7	대합면 십이리	366-1	답	48	48	진O옥 외 5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00길			
8	대합면 십이리	367-1	답	145	145	김O숙	대구 달서구 용산동 00			
9	대합면 십이리	607	도	1,242	41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0	대합면 십이리	372-2	대	42	42	신O수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산로 OO			
11	대합면 십이리	373-1	대	13	13	박O환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OO			
12	대합면 십이리	377-1	답	130	130	박O환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OO			
13	대합면 십이리	599-20	천	2,036	10	농림축산 식품부				

● **고성군 공고 제2023-431호**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호선(고성초교 ~ 고성애육원간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1. 고성군 고시 제2020-136(2020. 6. 26.)호로 기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58-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호선(고성초교~고성애육원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고성군 도시교통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5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호선) 조성사업
- 명칭: 고성초교~고성애육원간 도로(소로1-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

- 기정: 연장 158m, 폭원 10m, 면적 1,612㎡
- 변경: 연장 158m, 폭원 10m, 면적 1,67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성명: 고성군수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0년 6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2020년 6월 26일 ~ 2025년 12월 31일

6.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3년 3월 16일 ~ 2023년 3월 30일
- 열람장소: 고성군 도시교통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8. 관계도서: 실음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사(소로1-3호선: 고성초교~고성애육원간 도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6,619	1,671						
1	고성읍 서외리	58-1	전	324	324	사회복지법인 고성**원	고성읍 서외리 164-2				
2	고성읍 서외리	61-2	도	2,563	19	고성군					
3	고성읍 서외리	71-5	도	2,082	5	고성군					
4	고성읍 서외리	71-8	유	53	53	고성군					
5	고성읍 서외리	80-1	대	52	52	고성군					
6	고성읍 서외리	81-1	전	180	180	고성군					
7	고성읍 서외리	84-11	대	54	54	정*군	고성읍 수남리 534-3, 국도파크맨션 205호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	고성읍 서외리	84-12	전	8	8	오*련	고성읍 동외동 333				
9	고성읍 서외리	84-13	대	169	169	구*수	고성읍 서외리 84-8				
10	고성읍 서외리	84-14	전	46	46	허*호	고성읍 서외리 84-4				
11	고성읍 서외리	86-6	전	56	56	고성군					
12	고성읍 서외리	90-1	학	360	360	고성군					
13	고성읍 서외리	157-11	대	100	100	고성군					
14	고성읍 서외리	253-8	도	572	245	국토교통부					

● **산청군 고시 제2023-44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금서면 특리, 매촌리 일원에 산청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산 청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붙임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면:** 게재 생략
3. **열람 장소:** 산청군청 지역발전과

4. 관계도서는 산청군청 지역발전과(☎055-970-73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1.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72	8.5	국지 도로	75	금서면 특리 577	금서면 특리 538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173	8.5	국지 도로	159	금서면 매촌리 1311-1	금서면 매촌리 1317-1	일반 도로	-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 2-172호선	• 노선 신설 - L= 75m , B= 8.5m	• 군도30호선의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 2-173호선	• 노선 신설 - L= 159m , B= 8.5m	• 군도30호선의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 신설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138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2. 개정 이유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본청 교육정보과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폐지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가. 상위법령 제명(「지능정보화 기본법」) 변경(제2조, 제6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 12. 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 변경
- 나. 정보시스템 감리 및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제14조, 제15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2조에서 감리 대상, 감리 업무범위, 감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삭제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
- 다.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 부서(기관)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삭제(제9조)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3. 3. 1. 시행) 개정으로 도교육청 교육정보과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폐지됨에 따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 삭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을 당연직에 추가
 -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 라. 정보화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제12조)
-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을 '창의인재과장'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5.까지 경상남도교육감(참조: 창의인재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1430
- 주소 : (51430)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감 (참조 : 창의인재과)
- 전화 : 055-268-1241(FAX : 055-210-5140)
- E-mail : masan100@korea.kr

- 붙임** 1.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조 례 제 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안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부분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학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를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부분 중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교육기관 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 부분 중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로 한다.

제6조 제1항 부분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한다.

제6조 제2항 부분 중 “가 심의를 한 후 확정한다”를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5호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 문구를 삭제한다.

제6조 제4항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며, “정보화 기본계획”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 부서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7조 제2항 삭제하고, 제2항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 부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8조 제2항 제1~3호 부분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부분 중 “교육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3호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회의원”을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제6항 부분 중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으로 한다.

제9조 제8항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신설한다.

제10조 제4항 부분 중 “전문가로부터”를 “전문가에게”로 한다.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 제10조 제5항 부분 중 "협의 한"을 "협의한"으로 한다.
 제10조 제6항 부분 중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를 "회의 결과를 바로"로 한다.
 제11조 부분 중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은 교육정보과장"을 "정보화책임관은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의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를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운영 및"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5호의 "정보문화의 창달"을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부분 중 "시스템간"을 "시스템 간"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부분 중 "정보 보안"을 "정보 보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6조(시행교육규칙)"을 "제16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u>국가정보화 기본법</u> 과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학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u>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u>유아교육법</u> 」 제2조의 유치원과 「 <u>초·중등교육법</u> 」 제2조의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생략) 1. 학생, 학부모, <u>교육기관의 구성원</u> (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1. ----- <u>교육기관 구성원</u> ----- -----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현 행	개 정 안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때 ----- ----- -----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를 한 후 확정한다. ③ (생략) 1. ~ 4. (생 략) 5. 정보보호, <u>개인정보 보호</u> , 이용자의 권익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6. ~ 8. (생 략)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u>정보화 기본계획</u> 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3년----- ----- ----- ② ----- -----의 심의를 거쳐----- -----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개인정보 보호 ----- ----- 6. ~ 8. (현행과 같음) ④-----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 ----- <u>교육부</u> ----- ----- ⑤ (신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부서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신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부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참고하여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p> <p>② (생략)</p> <p>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p> <p>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p> <p>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p> <p>4. ~ 6. (생략)</p>	<p>제8조(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및 시행계획-----</p> <p>2. ----- 및 시행계획-----</p> <p>3. ----- 및 시행계획-----</p> <p>-</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 ③ (생 략)</p> <p>1.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창의인재과장, 교육정보과장, <u>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u></p> <p>2. (생 략)</p> <p>3. <u>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회의원</u></p> <p>④ ~ ⑤ (생 략)</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1. ----- -----, <u>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u></p> <p>2. (현행과 같음)</p> <p>3. <u>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때는-----.</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신설) <u>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1. <u>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u>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u></p> <p>3. <u>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u></p> <p>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제10조(회의 등) ① (생 략)</p>	<p>제10조(회의 등) ① (현행과 동일)</p>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u>전문가로부터</u>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위원장과 <u>협의 한</u> 경우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u>회의결과를 지체 없이</u>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생 략)</p>	<p>1. ~ 3. (현행과 동일)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u>전문가에게</u>----- -----. ⑤ ----- ----- <u>협의한</u> ----- ----- ----- ⑥ ----- <u>회의 결과</u> <u>바로</u> ----- -----. 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u>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 -----<u>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u> ----- -----<u>의 필요한 경비를</u>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② 정보화책임관은 <u>교육정보과장이</u>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 3. (생 략) 4. <u>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u> 5. 정보문화의 <u>창달</u> 및 정보격차의 해소 6. ~ 8. (생 략)</p>	<p>제12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u>창의인재과장</u>----- -----. 1. ~ 3. (현행과 같음) 4. <u>정보자원의 통합 구축·운영 및</u>----- ----- 5. <u>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u>----- 6. ~ 8. (현행과 같음)</p>
<p>제1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경상남도교육청 각 부서의 장과 교육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u>시스템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안</u>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 ----- ----- ----- -----<u>시스템 간</u>----- ----- -----<u>정보 보호</u>----- -----.</p>

경 남 공 보

제2602호

2023. 3. 16.(목)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시스템 감리) ① ~ ② (생 략)	제14조(정보시스템 감리) ① ~ ② (삭 제)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① ~ ③ (삭 제)
제16조(시행교육규칙) (생 략)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자 :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3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창녕군수(산림녹지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56번지 일원 면적 : 1,316,30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둔치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 ○ 시설개요 : - 휴식공간 조성 (A=1,316,300㎡)
점 용 기 간	당초 : 2013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4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함안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1117-24번지 외 2필지 일원 면적 : 324㎡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운내 양·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 시설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출관로(2,000mm, L=57m) - 유출토구(7.4m×6.5m×4.6m) - 유출수로 하상보호공(돌망태, L=15.7m)
점 용 기 간	당초 : 2018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변경 : 2023년 4월 18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5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남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진주시장(건설하천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478-5번지 외 5필지 일원 면적 : 13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헬기 이·착륙장 설치 ○ 시설개요 : - 헬기 이·착륙장 설치
점 용 기 간	당초 : 2020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9일까지 변경 : 2023년 4월 10일부터 2026년 4월 9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창녕군수(산림복지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21번지 외 16필지 일원 면적 : 7,79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목적 : 둔치 휴게공간(실외정원) 조성 ○ 시설개요 : 휴게공간(실외정원) A=7,7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목 : 906주, 목책(35경간), 목재난간(46경간) - 잡석 1,552㎡, 인조화강석블록 764㎡, 판석 147㎡ - 물레방아(2.5×2.0m) 1개소, 석교(2.7×1.5m) 1개소 - 조경석(1.1×0.9×0.8) 22EA, 경관옹벽(0.45m) 19m - 나룻배조형물(1.8×0.6) 1EA, 의자 45EA 등 - 보안등 5EA, 경관등 11EA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밀양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경남인프라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40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149번지 일원 면적 : 0.17㎡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 시설개요 : 통신주 설치(H=8.0m) - A=0.17㎡(0.015㎡/주 × 11주) (통신주 1주 : 0.14m × 0.14m × 3.14 / 4 = 0.015㎡)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남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장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응석봉로4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687-9번지 외 7필지 일원 면적 : 1.61㎡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 시설개요 : - 한전주 14본 설치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남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시사장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469-3번지 외 2필지 및 곤명면 금성리 764-1번지 외 4필지 일원 면적 : 83㎡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2개소) ○ 시설개요 : - 완사배수장 : 토출관로(D1,350mm), L=32m - 금성배수장 : 토출관로(D1,000mm), L=40m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8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황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합천군수(상하수도과)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68-10번지 일원 면적 : 18㎡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한 지반조사 ○ 시설개요 : - 지반시추조사 1개소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